



합격의 대세, 이미 시작됐다!

수험생의 선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는 압도적 1위 1·2차 종합반
가장 많은 수강생이 선택한 변리사스쿨



변리사스쿨

특허법 조문 빈칸



변리사스쿨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_____하고 그 _____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_____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장려, 이용, 산업발전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_____을 _____할 권리를 _____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특허발명, 실시, 독점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_____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청구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_____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_____ "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 실시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_____한 날
부터 특허_____ 후 _____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설정등록, 출원일, 20년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_____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
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_____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_____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정등록, 지식재산처장, 특허료, 등록공고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_____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출원공개

제66조(특허결정) _____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_____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 특허결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_____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_____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심사청구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심사청구서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_____와 필요한 _____ 및 _____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_____를 내야 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_____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_____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_____(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_____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독립, 특허취소신청, 상대방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_____나 _____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_____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대표자, 관리인, 심사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_____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_____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_____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국내, 특허관리인, 위임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2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_____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_____(이하 "_____")이라 한다)이나 _____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후견감독인, 특허취소신청, 특허취소신청, 상대방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② 특허관리인은 _____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위임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_____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서면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_____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_____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출원의 _____ . _____ . _____
2. 특허권의 _____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_____
4. 신청의 _____
5. 청구의 _____

6. 제55조제1항에 따른 _____ 또는 그 _____

7. 제132조의17에 따른 _____

8. _____의 선임

위임, 특허관리인, 변경, 포기, 취하, 포기, 취하, 취하, 취하, 우선권 주장, 취하, 심판청구, 복대리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_____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_____하지 아니하고 _____위

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

하여 제출

장래, 특정, 포괄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_____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_____하면 행위를 한 때로 _____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 추인, 소급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_____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각각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_____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_____를 무효로 _____ 있다.

대리인, 바꿀, 일부, 할 수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_____하고는 _____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_____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_____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외, 각자, 대표자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

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_____[특
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_____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_____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_____한
다)
5. 출원서에 _____(명세서에 _____이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_____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_____이 경과된 경우
-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
면을 보정한 경우
-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
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_____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_____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특허고객번호, 주소, 국어, 제외, 명세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보정기간, 특허관리인, 기간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_____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_____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_____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
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
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_____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
2제1항 _____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_____이 제출되지 아
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_____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청구범위, 심사청구서, 보정, 각 호의 어느 하나, 국어번역문, 중복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_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
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_____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_____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_____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

다.

-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_____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서면, 소명서, 반려요청서, 즉시, 소명기간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_____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_____이 있으면 그 서류를 _____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 신청, 반환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_____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_____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_____조제_____항 또는 제_____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_____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_____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정, 의견서, 3, 1, 6, 방식, 수수료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_____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_____로 _____있

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_____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정명령, 무효, 할 수, 보정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3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_____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_____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_____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대표자, 대표자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_____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첫번째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_____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_____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_____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_____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_____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에 따른 _____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_____로 만료한다.

첫날, 오전 0시, 역, 전날, 마지막, 근로자의 날, 다음 날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_____ 이내에서 _____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_____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_____에 따라 그 기간을 _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_____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_____에 따라 또는 _____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0일, 한 차례, 교통, 청구, 단축, 연장, 이해관계인, 청구, 직권

제16조(절차의 무효)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_____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정당한, 2개월, 1년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_____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_____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_____의 청구기간

제132조의17, 재심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_____를 할 수 있는 기

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_____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

원은 _____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_____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원심사의 청구, 재심사, 취하, 확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

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_____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

전기간에 _____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

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

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_____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_____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특허료, 보전, 포기, 존속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

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_____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_____받

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_____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_____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_____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_____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_____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_____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_____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중단, 위임, 사망, 합병, 능력, 법정대리인, 수탁자, 대표자, 파산관재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_____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소멸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_____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_____ ·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_____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

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_____되거나 합병 후 _____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_____한 당사자 또는 _____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_____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_____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_____을 가진 자

수계, 상속인, 포기, 설립, 존속, 회복, 법정대리인, 수탁자, 당사자, 자격

제22조(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_____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_____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_____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_____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_____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에게 알려야 한다.

요청, 상대방, 기각, 송달, 명하여야, 다음 날, 당사자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_____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_____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_____ 있다.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_____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
을 각각 _____에게 알려야 한다.

직무, 사유, 장애사유, 할 수, 취소, 당사자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_____되
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_____기간이 진행
된다.

정지, 모든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4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_____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_____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_____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_____(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_____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유번호, 직권, 고유번호, 주소, 대리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_____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_____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_____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_____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허고객번호, 주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_____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_____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_____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_____(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

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도달, 우편, 등록신청서류, 국제출원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

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_____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_____ 있는 때에 _____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화, 확인할 수,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특허취소신청인·심판청구인 그 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_____(정

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_____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_____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장애, 공지, 다음 날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_____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서명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 ③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_____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등기우편, 발송한 날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_____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_____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_____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특허관리인, 항공등기우편, 발송일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

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_____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_____에 _____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이용신고, 확인한 때, 지식재산처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_____에 게재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_____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_____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 특허공보, 2주일, 다음 날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밝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_____에게 미친다.

승계인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_____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_____하게 할 수 있다.

이전, 속행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_____을 한 사람 또는 그 _____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_____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발명, 승계인, 공동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_____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공동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_____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전, 동의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_____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_____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_____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대항, 승계,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신고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변리사스쿨, 1등의 비결!
1차 압도적 대세로
합격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변리사스쿨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5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_____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_____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 본문, 무권리자, 30일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_____로 한다는 심결이 _____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 확정, 30일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_____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증명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_____에 해당 특허권의 _____(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_____의 이전을 말한 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2호 본문, 법원, 이전, 지분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_____(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_____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_____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_____와 _____도
면 및 _____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서, 주소, 주소, 발명자, 명세서, 필요한, 요약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_____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_____은
법 제66조에 따른 _____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_____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_____할 수 없고 발명자의 _____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_____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_____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
명자의 기재가 일부 _____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_____한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_____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_____가 _____ 또
는 _____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_____가
있는 경우에는 그 _____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 출원인, 특허결정, 설정등록, 추가, 동일성, 보정서, 지식재산처장, 누락, 명백, 출원인, 발명자, 서명, 날인, 불가한 특별한 사유, 사유

③ _____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
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_____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_____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_____ 및 신청 전·후 _____이 _____ 또는 _____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_____된 경우
 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_____한 경우
 3. 특허권자가 법 _____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특허권자, 정정발급신청서, 지식재산처장, 특허권자, 발명자, 전원, 서명, 날인, 누락, 명백, 제99조의2

-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_____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_____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청구범위, 1년 2개월, 보정, 3개월, 빠른 날, 취하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_____로 적어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_____ 및 _____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어, 명세서, 도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

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4. _____로 적지 아니한 경우(_____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_____(명세서에 _____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어, 제4조제1항, 명세서, 발명의 설명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_____를 특허 _____을 할 때 특허 _____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_____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_____(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 _____이 출원 _____를 한 경우

취지, 출원, 출원서, 1년 2개월, 3개월, 빠른 날, 보정, 출원인, 심사의 청구

-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_____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_____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_____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취하, 보정, 마지막, 보정, 마지막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_____를 말한다.

-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영어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

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_____에 _____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_____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_____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출원서, 최초, 최종, 국어번역문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_____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호범위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_____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누구든지, 출원인, 청구범위, 국어번역문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_____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1년 6개월, 신청, 청구범위, 국어번역문

특허법 시행령 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_____특허공보와 _____특허공보로 구분한다.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_____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_____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등록, 공개, 출원서, 최초, 제42조의3제5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 가. 해결하려는 과제
 - 나. 과제의 해결 수단
 -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_____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_____”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_____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범위, 기재방법, 임시 명세서, 취지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6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_____를 적은 명세서와 _____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_____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_____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_____될 것
2. 발명이 _____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_____·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통상의 지식, 쉽게 실시, 뒷받침, 명확, 기능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_____

나. 과제의 해결 _____

다. 발명의 _____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_____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제, 수단, 효과, 생략, 임시 명세서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 _____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_____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_____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_____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_____기탁기관"이라 한다)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나.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처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지식재산처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_____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_____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_____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원 전, 입수, 국내, 국제, 지정, 취지, 수탁증, 국내

특허법 시행령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_____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_____을 적어야 한다.

수탁번호, 입수방법

특허법 시행령 제4조(미생물의 분야) ①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_____ 또

는 _____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_____되거나 _____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_____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_____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_____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 연구, 공개, 설정등록, 의견서, 허락, 타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_____(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 _____.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③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서열목록, 해야 한다,

-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_____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_____ 있다.
-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_____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_____를 적어야 한다.
-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_____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_____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_____ 기재하여야 한다.
-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_____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_____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할 수, 할 수, 적정한 수, 번호, 태일적, 2 이상, 먼저, 행, 아라비아숫자

-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_____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 군

- 특허법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_____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_____된 것이어야 한다.

상호관련성, 개선



현장의 열기가 증명하는 1위의 힘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그 이유, 생생한 강의,
수험가 최상으로 제공하는 학습환경으로 완성되는 합격루틴

< 변리사스쿨 1차 현장종합반 >



변리사스쿨



언제 어디서나 완벽학습!
스마트한 합격 솔루션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수험생이 신뢰하는 커리큘럼,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합격까지 한번에

< 변리사스쿨 1차 온라인종합반 >



변리사스쿨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7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

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_____을 이용한 _____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연법칙, 기술

제29조(특허요건) ① _____상 이용할 수 있는 _____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_____ 또는 _____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_____ 또는 _____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_____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_____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산업, 발명,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통상의 지식, 쉽게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_____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_____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_____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 _____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_____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_____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_____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

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초, 발명자, 출원한 때, 출원인, 출원일, 출원공개, 등록공고,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_____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_____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_____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_____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_____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_____, _____ 또는 _____ 된 경우

2. _____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_____이 확정된 경우

⑤ _____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_____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_____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른 날, 먼저, 같은 날, 협의,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항 단서,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 심결, 발명자, 승계인, 기간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_____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질서, 풍속, 위생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

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_____ 및 _____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3항제2호, 제8항, 제45조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_____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_____, 같은 조 _____ 및 _____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명백한, 제42조제3항제2호, 제8항, 제45조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_____(같은 조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_____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29조, 제1항제1호, 제36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

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취하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취하

제53조(변경출원)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

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

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

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_____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_____ 또는 _____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_____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형상, 구조, 조합, 극히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_____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면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_____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도면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_____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_____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_____로 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면, 명할 수, 무효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_ 또는 _____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국기, 훈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_____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처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공해방지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_____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0년

	특허법	실용신안법
대상	발명 (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제2조3호)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제4조1항)
성립 요건	고도성 要 (특허법제2조1호→특허법제29조제2항에서 평가)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제2조1호→실용신안법제4조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제29조제2항과 상이)
진보성	쉽게 (특허법제29조2항)	극히 쉽게 (실용신안법제4조2항)
부등록사유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 명 (특허법제32조)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 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안 (실용신안 법제6조)
도면첨부要否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제42조2항)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제8조2항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 조제1항)
우선심사대상의 상이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4. 지식재산처장이 외국지식재산처장과 우선심 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법시행령제9조) 3.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 (특허법시행규칙제39조)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특 허법제88조1항)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제22조1항)
존속기간 연장제도	허가 등(특허법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제92 조의2)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
효력제한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 (특허법제96조)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실용신안법제24조)
간접침해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제127조)	방법/물질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제29조)
생산방법 추정규정	有 (특허법제129조)	無
PCT(도면제출)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 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 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 장에게 제출 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미 제출시 지식재산처장은 제출명령 可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 可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법 47조 의 보정으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제1 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적용.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실용신안법 제45조 제2 항).
몰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 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 ^여 <u>야 한다</u> (특허법 제23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 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51조).
전문심리위원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 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허법 제226 조 제2항).	-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8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_____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_____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 되거나

_____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_____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_____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_____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_____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12개월, 제1항 각 호, 출원공개, 등록공고, 반하여, 취지, 30일, 보완수수료, 보정, 3개월, 설정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

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_____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_____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_____(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_____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_____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_____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_____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_____ (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_____ 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출원인, 송달하기 전,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 청구할 때, 최초, 최종 국어번역문, 정정

③ 제1항 _____ 및 _____에 따른 보정 중 _____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_____ 또는 _____하거나 청구항에 _____하여 청구범위를 _____하는 경우
2. _____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_____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_____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_____부터 _____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 _____ 또는 _____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_____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_____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제2호, 제3호, 청구범위, 한정, 삭제, 부가, 감축, 잘못, 명확, 보정 전, 제1호, 제3호, 제1호, 제2호, 마지막, 국어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 _____ 및 _____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_____ 또는 _____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_____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_____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_____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_____ 전에 한 보정
-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_____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_____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_____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새로운 거절이유, 직권보정, 특허결정, 청구, 심판, 직권 재심사, 재심사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_____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

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심판청구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각하결정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국어번역문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_____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국어번역문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특허출원인, 국어번역문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국어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어번역문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9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_____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_____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_____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 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_____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_____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_____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_____을 적용하는 경우
3. _____을 적용하는 경우
4. _____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인, 최초, 국어번역문, 보정, 거절결정, 특허결정, 설정등록, 출원, 다른 특허출원,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_____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_____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_____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_____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⑦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

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취지, 출원, 우선권 주장, 제출, 30일, 3개월, 30일, 30일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_____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_____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_____에서 _____되지 아니한 청구항
2. _____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_____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_____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_____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_____출원, _____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_____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기각, 30일, 최초, 청구범위, 거절결정, 거절, 거절, 거절결정, 삭제, 청구범위, 국어, 분리, 분할, 변경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_____출원인 경우

분리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_____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_____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분리, 30일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_____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최초, 취하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

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 나.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처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지식재산처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_____이 그 당사국 또

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_____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_____이 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_____, 최초로 출원한 _____ 및 출원의 _____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_____을 적은 서면, 발명의 _____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_____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_____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_____한다.

⑦ 제1항에 따라 _____을 한 자 중 제_____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_____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9조, 제36조, 국민, 출원, 1년, 취지, 국가명, 연월일, 연월일, 명세서, 출원번호, 1년 4개월, 상실, 우선권 주장, 2, 1년 4개월

시행규칙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_____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_____를 말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전자적 매체, 국어번역문, 접근코드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_____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_____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_____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_____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_____·_____ 또는 _____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_____되었거나 _____,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_____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_____와 _____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_____,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자신, 최초, 1년, 분할, 분리, 변경, 포기, 무효, 취하, 설정등록, 특허거절결정, 거절한다, 취지, 선출원, 제30조제1항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_____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_____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_____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_____(선출원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_____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_____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공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 설정등록, 취하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_____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_____, _____ 또는 _____된 경우
2. _____되었거나 _____,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_____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_____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_____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_____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원일, 포기, 무효, 취하, 설정등록, 특허거절결정, 심결,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

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특허권자가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

(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시 명세서



압도적인 합격률!
변리사 스쿨의 종합반으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변리사스쿨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0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_____는 _____상 필요한 경우
_____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_____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_____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_____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_____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_____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_____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_____을 지급하
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_____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_____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
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국방, 외국, 비밀, 정부, 특허, 비상시, 수용, 보상금, 보상금, 포기, 보상금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5천만원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_____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_____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보상금, 법원, 30일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_____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행정기관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_____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

사한다.

② _____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 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_____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_____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_____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 누구든지, 3년, 출원인, 청구범위, 국어번역문, 30일, 취하, 취하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_____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원공개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
_____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_____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_____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_____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의 청구, 지식재산처장,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
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_____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
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_____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_____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공개, 긴급, 재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_____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지식재산처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_____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_____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10. 지식재산처장이 _____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

원

11. 삭제

12. 삭제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우선권주장, 국제조사, 출원인, 외국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_____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_____출원 또는 _____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_____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_____결정서 또는 _____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개월, 12개월, 분할출원, 분리, 변경, 우선심사, 특허거절, 특허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_____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_____출원, _____출원 또는 _____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_____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_____를 통지하거나 _____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4개월, 9개월, 분할출원, 분리, 변경, 정당, 우선심사, 거절이유, 특허결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_____된다.

1. _____ 또는 그 _____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법정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_____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_____를 가진 경우

제척, 심판관,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감정인, 대리인, 이해관계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_____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_____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다.

1. _____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_____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_____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_____하거나 _____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_____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취소, 취소, 정지, 거짓, 등록, 등록기준, 누설, 도용 청문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

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4. 외국 지식재산처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②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

(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5천만원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_____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_____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전문기관, 전담기관, 전자화기관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_____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_____, 같은 조 _____ 및 _____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42조제3항제2호, 제8항, 제45조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_____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 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3조의2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_____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심사결과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_____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_____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의견서, 제51조제1항, 직권 재심사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_____, _____ 또는 _____에 적힌 사항이 _____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_____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_____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_____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_____부

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_____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_____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_____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_____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 명백히, 특허결정, 일부, 특허료, 처음, 특허결정, 요약서, 범위, 잘못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_____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_____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_____, 같은 조 _____ 및 _____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_____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_____되거나 _____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_____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백한, 취소, 제42조제3항제2호, 제8항, 제45조, 설정등록, 취하, 포기, 통지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

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_____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통지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_____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_____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_____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_____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_____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_____인 경우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_____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_____할 수 없다.

출원인, 설정등록, 3개월, 보정, 재심사, 심판, 분리출원, 취소, 무효, 취하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_____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_____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_____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_____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년 6개월, 신청, 청구범위, 국어번역문, 등록공고, 비밀취급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_____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_____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_____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

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_____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설정등록, 질서, 풍속, 위생, 최초, 제42조의3제5항, 심사의 청구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_____가 있는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_____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_____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_____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

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_____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_____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_____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공개, 경고, 경고, 알고, 합리적, 설정등록, 처음, 제1항제4호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_____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_____를 할 수 있는 기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_____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심사의 청구, 재심사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_____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는 불복할 수 없다.

할 수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

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_____ 또는 _____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_____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출원공개, 설정등록, 질서, 풍속, 위생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1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_____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_____씩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_____ 또는 _____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년분, 1년분, 수년분, 모든

-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_____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_____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이익

-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_____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_____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_____된 것으로 본다.

6개월, 포기, 소멸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_____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일부, 1개월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_____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_____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_____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

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_____기간 또는 _____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2개월, 늦은, 3개월, 추가납부, 보전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_____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배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_____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 _____이나 특허를 _____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_____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_____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_____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

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_____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삭제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_____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6. 특허권을 _____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_____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_____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_____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_____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_____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잘못, 취소결정, 무효, 다음, 무효, 1개월, 심사청구료, 3분의 1, 제1호, 포기, 취소, 제141조제2항, 취하, 거부, 취하, 5년

제85조(특허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_____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_____까지를 말한다)을 _____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_____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_____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년, 연장된 날, 한 차례, 14년, 허가등

특허법 시행령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_____](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_____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_____ 또는 _____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물질, 최초, 마약, 향정신성

규정 제2조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 ①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특허는 연장등록출원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규정 제3조 (연장횟수) ① 하나의 특허에 대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은 _____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과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_____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1회, 최초

규정 제4조 (연장기간의 산정) 법 제89조제1항 규정의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_____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 기간 중 특허권자 또는 _____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_____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요된 _____ 관련서류의 검토 기간을 합산한 기간
2.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3. 농약 또는 농약원제를 등록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시행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약효나 약해 등의 시험기간과 농촌진흥청에서 소요된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설정 등록, 신청인, 임상시험, 허가신청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_____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_____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_____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 _____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_____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_____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개월, 6개월, 공동, 연장, 거절, 공보, 의견서, 하나, 어느 특허권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_____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_____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_____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_____가 아닌 경우
5. _____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_____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89조제1항, 등록된, 기간, 특허권자, 제90조제3항, 둘 이상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_____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원부, 공보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_____과 출

원심사 청구일부터 _____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_____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_____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_____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_____출원을 한 날
- 2의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_____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_____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_____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_____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4년, 3년, 출원인, 실제, 정당한, 분할, 분리, 변경, 제203조제1항, 제214조제1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_____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_____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_____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_____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_____ 또는 _____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 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자.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차.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 카.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 타.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_____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파.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식재산처장이 재심사에 따른 _을 한 날까지의 기간
- 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 더.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 러.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 머.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 버.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 서.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어.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출원인, 출원인, 추후보완, 중단, 중지, 보정, 특허여부의 결정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 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_____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

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설정등록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_____ 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_____을 _____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_____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전용, 사용, 청약, 알면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_____ · 사용 · _____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_____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_____을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생산, 양도, 청약, 생산한 물건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_____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_____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허가등, 용도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는 미치지 아니한다.

1. _____ 또는 _____(「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_____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_____을 한 때부터 _____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
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_____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_____에
는 미치지 아니한다.

연구, 시험, 통과, 출원, 국내, 조제, 의약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2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_____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동의, 실시, 동의

제136조(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_____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_____」 제10조제1항에 따른 _____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_____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발명진흥법, 통상실시권, 무효심판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_____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동의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_____부터 소멸된다.

그때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특허권의 상속이 _____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_____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시, 청산종결등기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_____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

호를 표시

3. 삭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_____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허표시, 특허출원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_____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_____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_____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권자, 독점, 특허권자, 실시사업, 일반승계, 등의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_____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_____(상속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_____

2. 전용실시권의 _____· _____(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효력, 이전, 일반승계, 포기, 제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혼동, 질권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_____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_____·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_____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_____과 함께 이전하

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_____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실시사업, 특허권, 소멸, 실시사업, 일반승계, 동의, 동의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_____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_____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_____할 수 있다.

등록, 등록, 질권, 대항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

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_____ 또는 _____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_____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_____에서 _____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_____하거나 이를 _____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_____ 및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추가납부기간, 보전기간, 내거나 보전, 국내, 선의, 실시, 준비, 발명, 사업목적, 대가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 _____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_____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_____에서 그 발명의 _____사업을 하거나 이를 _____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_____ 및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출원, 알지 못하고, 국내, 실시, 준비, 발명, 사업목적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_____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

가 _____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_____에서 해당 발명의 _____사업을 하거나 이를 _____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_____ 및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_____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_____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등록,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 국내, 실시, 준비, 발명, 사업목적, 등록, 등록, 대가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_____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_____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_____사업을 하거나 이를 _____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_____ 또는 고안 및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_____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_____을 받은 자. 다만, _____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 알지 못하고, 국내, 실시, 준비, 발명, 사업목적, 등록, 등록, 제118조제2항, 대가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_____인 특허권을 _____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_____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_____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_____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유, 분할, 제외, 질권설정, 분할, 실시, 대가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_____된 후 재심청구 _____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확정, 등록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_____된 후 재심청구 _____ 전에
_____에서 _____로 그 발명의 _____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_____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_____ 및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확정, 등록, 국내, 선의, 실시, 준비, 발명, 사업목적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

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_____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_____ 전에 _____로 _____에서

그 발명의 _____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_____ 하고 있는 자는 _____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확정, 등록, 선의, 국내, 실시, 준비, 원통상실시권, 대가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_____ 또는 특허출원일과 _____에 출원되어 등록된 _____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_____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_____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_____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 전, 같은 날,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 원권리, 제2항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

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_____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_____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 계약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_____을 가질 수 없다.

통상실시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_____.

할 수 없다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_____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_____하여야 한다.

대가, 압류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3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_____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_____(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_____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_____ 이상 _____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_____ 이상 _____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_____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_____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_____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_____을 _____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건, 협의, 비상업적, 제4호, 3년, 국내, 3년, 국내, 국내수요, 공공, 불공정거래, 의약품, 수출

② 특허출원일부터 _____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_____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_____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_____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_____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_____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_____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 _____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

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년, 청구별, 국내수요, 전량, 대가, 불공정거래, 수입국, 반도체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분(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_____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록, 답변서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_____ 및 _____
2. _____와 그 지급 _____ 및 지급 _____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_____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_____사항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범위, 기간, 대가, 방법, 시기, 외관, 준수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_____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송달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_____ 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특허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탁

제113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_____ (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대가

제114조(재정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_____에 따라 또는 _____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_____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재정을 받은 _____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_____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_____ 또는 _____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_____부터 소멸된다.

신청, 직권, 이익, 목적, 사유, 제110조제2항제3호, 제4호, 그때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_____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대가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_____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_____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대가, 재정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_____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대가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_____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_____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_____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알려, 보상금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_____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_____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_____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_____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_____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일 전, 이용, 일 전, 저촉, 허락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_____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

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_____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_____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_____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 _____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이유, 심판, 경제, 진보, 제1항, 대가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_____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_____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_____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_____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_____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실시, 전용, 전용, 독점, 알면서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_____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청구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또는 _____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_____(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_____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_____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_____하
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_____ ·
_____ · _____ 또는 _____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_____을 하는 행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청약, 전시, 사용, 청약,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청약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_____ 사용하는 _____을 생산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_____ 사용하는 _____을
생산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생산에만, 물건, 실시에만, 물건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_____ 또는 _____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_____,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_____,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금지, 예방, 폐기, 제거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_____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_____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_____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_____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_____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_____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_____ 또는 _____ 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_____ 수량 또는 그 _____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_____ 실시권의 설정, _____ 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_____ 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_____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_____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양도, 합계, 침해행위 외, 침해행위 외, 생산, 판매, 특허권자, 전용, 넘는, 침해행위 외, 전용, 통상, 통상, 뺀, 실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_____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_____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_____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_____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_____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_전체의 취지와 _____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_____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_____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_____ 여부
2. _____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_____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_____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_____
5. 침해행위의 _____ . _____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_____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_____ 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_____ 노력의 정도

이익액, 합리적, 초과액, 중대한, 증명, 변론, 증거조사, 법원, 5배, 우월적 지위, 고의, 인식, 피해규모, 이익, 기간, 횡수, 벌금, 재산, 피해구제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_____ 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_____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_____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갈음, 함께, 신용회복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_____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실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4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_____ 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_____ 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_____ 의 _____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_____ 의 _____ 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

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_____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_____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인, 행위태양,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유무 판단, 행위태양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_____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_____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_____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_____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_____또는 열람할 수 있는 _____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_____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_____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_____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_____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출, 이유, 이유, 반드시, 범위, 사람, 진실, 곤란, 증거, 진실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_____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_____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_____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_____ 또는 _____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방법, 방법, 국내, 국내, 국외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_____,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9조제1항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_____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_____ 또는 _____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_____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_____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출원공개, 설정등록, 선출원, 질서, 풍속, 위생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_____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4. 외국 지식재산처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②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_____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정, 응답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

하

할 수 있다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_____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_____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_____심판법」 또는 「_____소송법」에 따른다.

법률, 불복, 행정, 행정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_____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7년, 1억원, 의사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___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5천만원, 전문심리, 2년, 1천만원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② _____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심리

제223조(특허표시) 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_____ 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3. 삭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_____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허출원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만원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_____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_____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_____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_____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_____ 하거나 _____ 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청, 취득, 영업비밀, 지장, 송달, 기각, 각하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_____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_____ 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_____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청, 즉시항고, 확정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

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

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_____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_____ 자가 밝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_____ 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밝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_____ 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밝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_____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열람, 방지 아니한, 2주일, 확정, 모두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_____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년, 5천만원, 고소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_____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년, 5천만원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만원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5천만원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_____와 _____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주의, 감독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_____하거나 피해자의 _____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_____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수, 청구, 초과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_____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_____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_____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이 부과·징수한다.

거짓 진술, 명령, 거부, 지식재산처장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_____을 둘 수 있다.
-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력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_____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심판장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_____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구술, 질서, 풍속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의2(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적시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_____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_____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_____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_____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_____된 것으로 본다.

동의, 중지, 조정, 취소, 취하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_____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_____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결, 재개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5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_____, _____ 또는 _____의 무효심판이나 _____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 _____.
-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_____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_____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_____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제135조제1항·제2항, 할 수 있다. 모두, 모두, 모두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_____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_____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_____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청, 이유, 남용, 감면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_____ 및 그 _____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_____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_____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_____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_____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_____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_____ 또는 _____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_____ 및 필요한 _____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_____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지, 이유, 변경, 특허권자, 동의, 이유, 다르다, 설명서, 도면, 설명서, 도면, 정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① 법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⑤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_____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특허거절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_____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심판장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_____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_____ 또는 선량한 _____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구술, 질서, 풍속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_____에 따른 결정으로 _____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_____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_____ 및 _____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직권, 전문심리위원, 당사자, 제척, 기피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_____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

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_____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심판장, 의견진술

제158조의2(_____ 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적시

제164조의2(_____ 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조정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_____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_____하고

_____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_____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보정, 경미, 명확, 각하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_____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_____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청구인, 7일, 의견서, 명백히 잘못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답변서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_____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답변서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_____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지장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_____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_____, _____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_____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_____결정 또는 _____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_____관계를 가진 경우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 특허여부, 심결, 이해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_____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인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_____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_____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_____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_____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인, 진술, 못한, 후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_____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구술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_____할 수 없다.

불복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_____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_____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긴급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_____할 수 있다.

회피

제155조(참가) ① _____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_____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_____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_____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_____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9조제1항, 종결, 취하, 종결, 피참가인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_____할 수 없다.

불복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_____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_____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청, 직권, 심판원장, 심판장, 의견서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_____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_____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유, 의견, 취지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_____할 수 있다.

진행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

여 심리 또는 심결을 _____하거나 _____할 수 있다.

병합, 분리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_____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_____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결, 재개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_____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

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_____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_____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확정, 동의, 청구항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_____ 동일 일 _____ 및 동일 _____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_____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사실, 증거, 각하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_____ 또는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_____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권, 신청, 할 수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_____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_____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_____된 후 _____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심결, 결정, 확정, 당사자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6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_____, _____ 및 _____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제156조

제172조(심사의 효력) _____에서 밝힌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심사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_____하

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_____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_____한 다.

취소, 심사, 기속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_____를 _____하는 경우

2. _____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_____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_____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서 _____(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로 말한다) 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_____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_____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_____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_____할 수 없다.

청구범위, 감축, 잘못, 명확, 확정, 변론이 종결,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잘못, 변경

-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_____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_____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_____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_____(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_____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_____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_____, _____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_____이 된 것으로 본다.
-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_____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_____에 게재하여야 한다.

특허, 의견서, 소멸, 특허취소, 무효, 동의, 무효심판,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설정등록, 심리의 종결, 특허공보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_____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_____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_____(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_____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_____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6개월, 제29조, 제36조, 선행기술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

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_____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의13제2항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_____.

할 수 없다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_____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_____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특허권자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_____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병합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_____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_____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2조의14제2항, 취소이유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_____.

의견서, 할 수 없다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_____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_____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_____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

에 _____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_____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청구항, 이전등록, 특허, 소멸, 처음, 해당, 등록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_____ 또는 _____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_____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_____를 주장함으로써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_____된 것으로 본다.

-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분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_____된 기간에"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_____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_____된 기간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제1항, 제159조제1항 후단, 증거, 무효사유, 취하, 지정, 청구, 1개월, 지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_____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_____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기간, 초과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

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_____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_____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 청구항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_____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_____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확정, 확정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_____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_____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_____피청구인으로 한다.

공모, 사해, 공동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_____이 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_____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_____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_____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_____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일, 송달, 3년, 확정, 저촉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_____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_____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_____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_____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_____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_____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_____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_____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각하결정, 거부, 30일, 심판장, 대가, 비용, 대법원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_____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보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_____에게 보내야 한다.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_____ 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_____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_____ 한다.

취소, 다시, 기속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_____ 국민
2. 국내에 _____ 또는 _____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_____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주소, 영업소, 대표자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_____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

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_____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제약국(締約國)의 _____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제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_____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제출원, 지정, 출원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_____, _____ 또는 _____를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_____ 계약국의 지정
2. 지정된 계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 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_____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계약국의 지정을 _____할 수 있다.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_____에 도달한 날을 「특

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_____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_____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_____ 또는 _____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 _____ · _____에 따른 사항 및 _____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_____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_____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_____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_____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_____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처, 출원인, 언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제1호, 제2호, 출원인, 보완, 통지, 도달일, 도달일, 없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_____된 부분 또는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_____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락, 잘못, 접수일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_____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_____ 또는 _____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을 위반한 경우

명칭, 요약서, 제3조, 제197조제3항, 방식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_____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_____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_____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_____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취하, 보정, 수수료, 제194조제1항, 일부, 지정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_____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첫번째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선일부터 _____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_____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_____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년 6개월, 청구, 모든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혁명·폭동·파업·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참고]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

PCT 에는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음.

우선권 주장의 회복 - 적용 기준

■적용 규칙: 26의2.3(a) and 49의3.2(a)

■두 가지 회복 기준:

□ Due Care: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우선권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한 경우

□ Unintentionality: 우선권 내에 출원하지 못한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유보하지 않은 청은 두 가지기준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지정관청은 국내 법에 따라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수리관청에 의한 회복 (규칙 26의3.3)

■조건:

- ☐ 수리관청에 신청해야 함
- ☐ 기한: 우선권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
- ☐ 출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의 설명 (statement of reasons) 제출
- ☐ 선언 혹은 다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 ☐ RO/IB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

수리관청에 의한 회복 거절의 효력(규칙 26의2.3)

- 국제출원일에서 14개월 이내에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한 우선권 주장은
 - ☐ 수리관청에 의해 회복되지 않아도 무효로 간주되지않음 (규칙 26의2.2(c)(iii))
 - ☐ 국제단계에서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됨
- 그러한 우선권 주장이 국내단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보증되지 않음

우선권 주장 회복의 국내단계에서의 효력(규칙 49의3.1)

- “due care” 기준에 기초한 수리관청의 회복은 모든지정관청에서 유효
- “unintentional” 기준에 기초한 수리관청의 회복은 해당기준을 적용하는 지정관청에서만 유효
- 수리관청의 회복은 수리관청에 대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 지정관청은 제한된 검토 가능
- 수리관청의 회복 거절은 지정관청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음

우선권 주장 회복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청

- ☐ 규칙 26의2.3(j): 수리관청으로서 국내법과의 상충을 통보한 관청
- ☐ 규칙 49의3.1(g): 지정관청으로서 수리관청의 결정에 따른 효력이 국내법과 상충함을 통보한 관청
- ☐ 규칙 49의3.2(h): 지정관청으로서 국내법과의 상충을 통보한 관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_____ 이내인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2개월



조현중 특허법 쪽지시험 17회차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지식재산처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_____

나. 단순히 _____한 동물·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_____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_____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_____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_____ (=프로그램 가운데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범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함)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_____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⑦심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이론, 발견, 정신, 사람, 정보, 컴퓨터프로그램, 불명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_____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

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 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수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_____ 또는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_____ 전까지 _____,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

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_____ 또는

_____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06조의14제7항·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7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감축, 추가수수료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_____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출원일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_____를 적은 서면 및 이를 _____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취지, 증명

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_____을 말한다.

30일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_____(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_____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_____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_____ 및 _____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_____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년 7개월, 1개월, 제19조(1), 출원심사의 청구,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제47조제1항, 보정, 정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_____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_____"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

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_____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_____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_____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_____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_____"로 본다.

제201조제4항, 기준일 중 늦은 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

제203조(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 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_____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_____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_____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_____로 할 수 있다.

국어번역문, 국어번역문, 서면, 무효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_____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_____ 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제47조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_____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_____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기준일, 취하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_____로 한다.

2개월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_____(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_____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_____이 지난 후)"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_____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_____(_____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연장,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 국어, 출원공개, 국어, 합리적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_____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_____(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 ② 삭제
-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

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⑤ 삭제

수수료, 국어번역문, 기준일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_____(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_____이 있는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수수료, 국어번역문, 결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_____(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_____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국어번역문, 수수료, 국내서면제출기간, 연장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_____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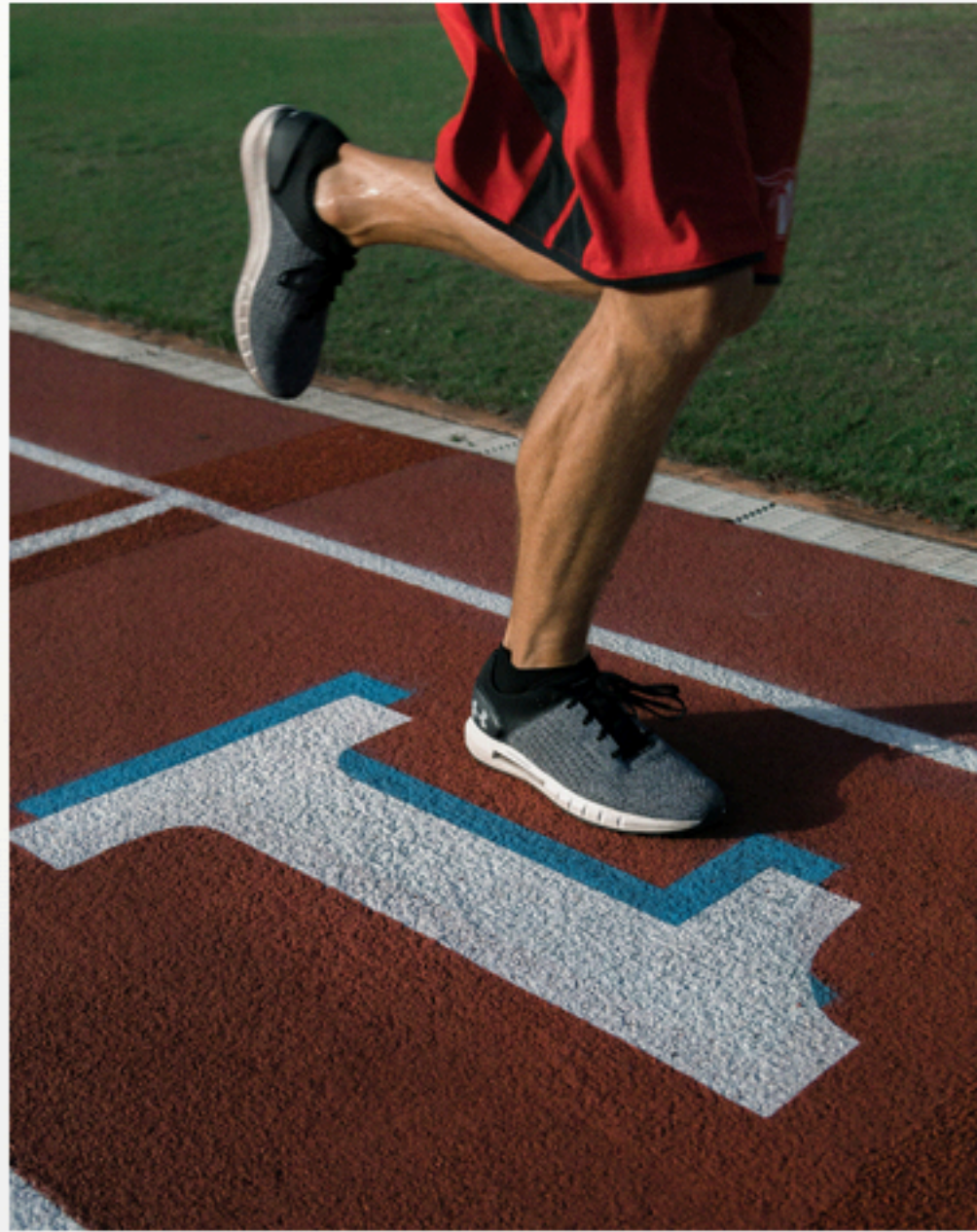
-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국제출원일

상표법 조문 빈칸



변리사스쿨



막판 스퍼트도 1위가 많다
실전집중 프로그램

뒤늦은 불안도, 지금의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빠르게 따라잡는 가장 검증된 길

< 변리사스쿨 > 1차 하반기종합반



변리사스쿨



상표법 Daily 학습자료 1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1회차 복습

- . 표장(mark)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의 상품의 출처표시
- . 표장(mark) 유형 - 상표(Trade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samsung), 단체표장(Collective mark, only 법인, 예: 새마을금고),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세계일류상품), 업무표장(Business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YMCA)
- . 상표(Trade mark) - 자기의 상품(서비스 포함)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 mark) -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 . 절차총칙 - 본인능력(제4조, 제5조, 제6조), 대리인능력 등(제7조 내지 제15조), 기간 계산.연장 등.추후보완.정지(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서류 작성.제출.송달(제28조 내지 제32조), 수수료(제78조), 반려.무효 방식심사(시규 제25조, 제18조), 권리 이전시 절차의 효력승계.속행(제20조, 제21조), 취하.포기

제1조(목적)1) 이 법은 _____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_____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 업무상 신용 유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제89조(상표권의 효력)2) 상표권자는 _____에 관하여 그 _____를 _____할 권리를 _____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상품, 등록상표, 사용, 독점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3) ① _____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_____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지정상품의 보호범위

제2조(정의)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_____하기 위하여 _____하는

1) 특허법 제1조(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 → 산업발전 이바지 vs 상표를 보호 → 산업발전 이바지 & 수요자 이익 보호
 2)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특허발명 실시 독점 vs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사용 독점
 3)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vs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지정상품
 4) 특허법 제2조(정의) : 발명이란 자기창고 vs 상표란 자타상품식별 위한 표장

_____ (標章)을 말한다.

식별, 사용, 표장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_____ (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출처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표시)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유통)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광고)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_____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_____에 의하여 _____씩 _____할 수 있다.

5)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α vs 등록일부터 10년+10년 단위로 갱신 可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0년, 갱신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_____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_____(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 30일

제68조(상표등록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_____(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특허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vs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7)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출원 → 심사청구 → 특허결정 → 특허료 납부 vs 출원 → 출원공고결정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8)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無

제36조(상표등록출원)⁹⁾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4. _____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이하 “_____”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상품류

-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수수료)¹⁰⁾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¹¹⁾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¹²⁾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_____이나 심판 또는 재심

9)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주소 + 명[도]요 vs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10)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83조 제1항(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1)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특허취소신청 vs 이의신청

12)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심사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vs 이의신청인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¹³⁾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_____”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상표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¹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보불심) 또는 제116조(거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출x상신청x불복

제8조(대리권의 증명)¹⁵⁾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¹⁶⁾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¹⁷⁾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13)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특허관리인 vs 상표관리인

14)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출존특신청우불복 vs 출x상신청x불복

15)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16)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7)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¹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¹⁹⁾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_____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청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²⁰⁾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보불심) 또는 제116조(거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²¹⁾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18) 특허법 제9조(개별대리)

19)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vs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20)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21) 특허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²²⁾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²³⁾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²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_____
2. 제115조에 따른 _____
3. 제116조에 따른 _____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조(절차의 무효)²⁵⁾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2) 특허법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23)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24)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거불심 청구기간 vs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 보불심 청구기간, 거불심 청구기간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보불심절차 無

25)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²⁶⁾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_____
2. 제116조에 따른 _____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_____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재심의 청구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²⁷⁾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²⁸⁾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²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³⁰⁾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26)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거불심, 재심 vs 보불심, 거불심, 재심

27)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28) 특허법 제19조(절차의 속행)

29) 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30) 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³¹⁾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_____ 및 _____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_____ 또는 _____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상대방,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상대방

제25조(절차의 중지)³²⁾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³³⁾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³⁴⁾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_____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1) 특허법 제22조(수계신청) :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명령 요청(상대방) vs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신청(상대방)

32) 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33) 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34) 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등록신청서류, PCT 국제출원서류 vs 등록신청서류,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류(제170조)

등록신청서류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_____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편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³⁵⁾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³⁶⁾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³⁷⁾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³⁸⁾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35)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36)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37) 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38) 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절차의 보정)³⁹⁾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⁴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건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39)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40)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상표법 Daily 학습자료 2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2회차 복습

- . 27 -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
- . 3④本 - 사용의사
- . 3④但 - 직원
- . 33 - 그 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관용명칭
 - 그 상품의 성질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현저한 지리적명칭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흔한 성·명칭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간단 and 흔한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그 외 식별不可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⁴¹⁾ _____인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재외자, 외국인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⁴²⁾ ① 국내에서 상표를 _____ 또는 _____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_____과 _____은 _____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 지식재산처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 ②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

41) 특허법 제25조

42) 특허법 제33조 제1항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_____을 _____으로 표시한 표장_____ 된 상표
보통명칭,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만으로
 2. 그 상품에 대하여 _____하는 상표
관용
 3. 그 상품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를
 _____으로 표시한 표장_____ 된 상표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만으로
 4. _____이나 그 _____ 또는 _____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만으로
 5. _____ 또는 _____을 _____으로
 표시한 표장_____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명칭,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만으로
 6. _____하고 _____ 있는 표장_____ 된 상표
간단, 흔히, 만으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_____ 상표
식별할 수 없는
- ② 제1항_____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_____부터 그 상표를
 _____한 결과 수요자 간에 _____를 표시하는 것으로 _____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_____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호부터 제7호, 출원 전, 사용,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식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



상표법 Daily 학습자료 3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3회차 복습

- . 34 - 국가·국장 등과 동일·유사 **기관·기구의 경우 자기 명칭은 可**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비방
 - 국가·공공단체 등의 비영리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 **자기 표장은 可**
 - 공서양속 위반
 - 박람회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 **수상자는 상표 일부로 可**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포함 **타인 승낙 받은 경우는 可**
 - 선출원 등록상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와 동일·유사 **7호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 주지상표(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저명상표 혼동·희석화 염려
 - 품질오인·수요자 기만(국내 특출인 상표와 동일·유사)
 - 국내외 특출인상표(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부정한 목적
 -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 포도주,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 포함 **지리적표시 정당한 사용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可**
 - 식물신품종보호법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자유무역협정 보호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신의칙 위반
 - 조약당사국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거래관계 **권리자 동의 받은 경우는 可**
 - **11, 13, 14, 20, 21호 5개 출원시 기준**
- . 34③ - 4호 빼고 취소사유로 취소심판 청구되고 청구일 이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년 내 동일·유사 출원
- . 35 -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 동일자 출원 추첨제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_____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이나 _____의 _____용 또는 _____용 _____
_____와 _____한 상표

대한민국,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 공공기관, 감독, 증명, 인장, 기호, 동일유사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_____”이라 한다) _____,
_____ 또는 「_____」 _____(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_____와 _____한 상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국기, 동일유사
다. _____, _____ 또는 _____의
_____, _____,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약칭, 표장, 동일유사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_____이 지정한 _____등
의 _____,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_____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

지식재산처장, 동맹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정부 간 국제기구,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동일유사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_____이 지정한 _____등
이나 그 _____의 _____용 또는 _____용 _____·_____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지식재산처장, 동맹국, 공공기관, 감독, 증명, 인장, 기호, 동일유사, 동일유사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_____하
거나 이들을 _____ 또는 _____하거나 이들에 대한 _____가
있는 상표

거짓으로 표시, 비방, 모욕,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_____나 _____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업무, 공익사업, 저명한 것, 동일유사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
덕관념인 _____에 어긋나는 등 _____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
표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5. _____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_____을 받아 개최하는 _____ 또는
_____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_____을 받아 개최하는 _____의
_____. _____ 또는 _____과 _____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
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승인, 박람회, 외국정부, 승인, 박람회, 상패, 상장, 포장, 동일유사
6. _____의 _____ 또는 _____ 또는 이들의 _____을 _____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저명한 타인,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약칭, 포함
7. _____에 의한 _____의 _____(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공동의 제도).**
-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 동일유사, 동일유사
8. _____에 의한 _____의 _____과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선출원, 타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동일유사, 동일
9. _____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상표(주지상표,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 널리 인식, 동일유사, 동일유사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_____의 지리적 표시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널리 인식, 타인, 동일유사, 동일
11.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저명상표)과 _____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_____ 또는 _____을 _____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현저하게 인식, 혼동, 식별력, 명성, 손상
12.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를 _____할 염려가 있는 상표
-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13. _____ 또는 _____의 수요자들에게 _____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_____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_____를 입히려는 등 _____으로 사용하는 상표
- 국내, 외국,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동일유사, 부당한 이익, 손해, 부정한 목적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_____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_____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 동일유사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 또는 그 _____의 _____을

-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_____, _____ 또는 _____으로 된 상표
- 상품, 상품의 포장, 기능,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냄새만
16. _____ 내의 _____ 또는 _____의 _____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_____ 또는 _____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포도주, 증류주, 산지, 포도주, 증류주
17. 「_____」 제109조에 따라 _____과 _____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록된 품종명칭, 동일유사, 동일유사
18. 「_____」 제32조에 따라 _____된 _____의 _____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록, 타인, 지리적 표시, 동일유사, 동일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_____에 따라 보호하는 _____의 _____와 _____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자유무역협정, 타인, 지리적 표시, 동일유사, 동일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_____이 _____하거나 _____중인 상표임을 _____그 상표와 _____한 상표를 _____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타인, 사용, 사용을 준비, 알면서, 동일유사, 동일유사
21. _____에 _____된 상표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_____나 업무상 _____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 조약당사국, 등록, 동일유사, 계약관계, 거래관계, 동의, 동일유사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해서는 그 청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 심사기준 정리]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비교》

적용조문	대 상	요 건
법§34①2	저명한 고인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34①4	저명한 고인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법§34①6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구분	주지상표	저명상표
입법취지	사용사실상태의 보호	출처혼동방지 또는 희석화 방지
인식도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관련 수요자층	이종상품·이종영업에까지 걸친 일반 수요자층
범위	상품의 동일·유사범위 내	이종상품·이종영업까지 확대
제척기간	5년	없음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4호 비교》

법 §34①20	법 §34①4
당사자간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	단순한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13호 비교》

법 §34①20	법§34①13
모방대상상표의 인식도가 필요 없음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함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필요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불요
타인의 사용, 사용 준비중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적용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
동일·유사한 상품에 적용	상품 제한 없음(다만, 부정목적 유무 판단을 위해 견련성 검토 필요)

《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비교》

구분	법§34①9	법§34①11	법§34①12	법§34①13
취지	출처 오인·혼동 방지, 주지상표권자 이익보호	저명상품·영업과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 보호, 저명상표 희석화 방지	상품의 품질오인, 출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방지(다만, 출처의 오인·혼동은 법§34①9,11,13 등을 요건에 맞게 우선 적용하고, 본호는 수요자 기만에 초점을 맞춰 적용)	진정한 상표사용자 신용보호, 브로커 방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주지도	동종업종에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이종상품이나 영업에 걸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 대다수에게 현저하게 인식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
상표	동일·유사	비유사하여도 모티브나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는 경우	동일·유사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	비유사	비유사(다만, 수요자 기만 발생과 관련하여 견련관계 고려)	비유사(다만, 부정 목적 추정을 위해서는 견련성 검토 필요)
인식도 판단방법	상표 사용기간, 사용 방법, 사용지역, 거래 범위, 상품 판매량, 광고선전 등을 종합 고려	좌동	좌동	좌동(다만, 특정인의 상표라는 인식+부당한 기대이익 유무를 통해 인식도 판단 가능)
시기적 기준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제척기간	5년	없음	없음	없음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4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4회차 복습

- . 38① - 동일인 동일상표·동일상품 중복출원, 2이상 상표 1출원,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 . 출원보완명령 - 취성상상한
- . 부분거절제도, 절차계속신청제도
- . 우선심사신청 - 출원 후 제3자 사용, 조출/경고,이의,경고/기초,조달사업,존속만료

구분 시행규칙 제28조	상표건본	상표설명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일반상표(전형상표)	상표건본	임의	-	
입체상표	도면 또는 사진	임의	-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홀로그램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동작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전자적 기록매체
소리상표	-	필수	필수	소리파일
냄새상표	-	필수	필수	냄새건본
위치상표 (기타 시각적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_____(저명상표)·
 _____(국내외 특출인+부정한 목적)· _____(국내외 특출인+부정한 목적+지리적 표시)·
 _____(신의칙 위반) 및 _____(조약당사국 등록상표+거래관계)의 경우는 상표등록
 _____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제1항의
 _____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 _____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_____
2. 제68조에 따른 _____

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 출원을 한 때, 타인,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_____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_____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_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_____한 경우
3. 상표등록 _____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청구일, 3년, 존속기간이 만료, 포기, 취소의 심결이 확정

제35조(선출원)⁴³⁾ ① _____한 상품에 사용할 _____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_____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먼저 출원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_____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_____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협의, 추첨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_____ 또는 _____ 된 경우
2. _____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 또는 _____이 _____ 된 경우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확정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_____를 받은 경우(_____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_____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공존동의 제도).

동의, 동일, 동일, 제외

제38조(1상표 1출원)⁴⁴⁾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_____의 상품을 지정하여 _____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1류 이상, 1상표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⁴⁵⁾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⁴⁶⁾.

43) 특허법 제36조

44) 특허법 제45조

45) 특허법 제62조

46) 상표법 부분거절제도 vs 특허법 출원일체원칙

1. _____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_____에 위반된 경우
3. _____, _____, _____부터 _____까지, _____,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 일부, 그 지정상품, 제2조제1항, 조약, 제3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6조(상표등록출원)⁴⁷⁾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4. _____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⁴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47) 특허법 제42조

48)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 (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_____ (영 제2조제2호(색채, 홀로그램, 동작)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_____ (해당 표장을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_____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_____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_____ (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견본, 설명서, 시각적 표현, 소리파일, 냄새견본, 동작, 전자적 기록매체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영 제5조의 사항
 -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 가. 지정상품의 명칭
 -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상표법 시행령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⁴⁹⁾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_____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_____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_____할 것을 명_____.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49) 특허법 제42조의2

절차 _____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_____할 수 있다.

취지, 성명, 상표, 지정상품, 한글, 보완, 하여야 한다, 보완서, 반려

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_____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완기간, 서류반려요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합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⁵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_____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_____하지 아니한 경우
-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8.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50)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_____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1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15.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 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17.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완명령, 보완, 시각적 표현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2. 반려이유
 3. 소명기간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상표(전형상표) : 기호, 문자, 도형 /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구 분	상표견본	설명란 기재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일반상표	상표견본 1개	임의	불필요	
입체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입체사진	임의	불필요	사용증거(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채색된 1장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사용증거
홀로그램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동영상자료(임의)
동작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전자적 기록매체(필수)

구 분	상표견본	설명란 기재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소리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식별력 없는 소리인 경우) 소리파일, 악보(임의)
냄새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 냄새견본
기타 시각적 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사용증거 동영상자료(임의)
기타 비시각적 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 기타 자료(임의)

특수상표(비전형상표) : 입체, 색채만, 홀로그램, 동작, 위치(기타 시각적 상표), 소리, 냄새

cf) 절차무효사유

제39조(절차의 보정)⁵¹⁾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8조(절차의 무효)⁵²⁾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1) 특허법 제46조 : 3①, 6, 방식, 수수료

52) 특허법 제16조

cf) 특허법 학습자료 10회차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⁵³⁾.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⁵⁴⁾.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⁵⁵⁾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⁵⁶⁾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삭제

상표법 시행령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⁵⁷⁾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⁵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54) 특허법 제61조

55)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56) 특허법 시행령 제9조

57)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58) 특허법 제57조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⁵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⁶⁰⁾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⁶¹⁾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59) 특허법 제58조

60) 특허법 제58조의2

61) 특허법 제217조

제49조(정보의 제공)⁶²⁾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서류의 제출 등)⁶³⁾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⁶⁴⁾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거절이유통지)⁶⁵⁾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62) 특허법 제63조의2

63) 특허법 제222조

64) 특허법 제62조

65) 특허법 제63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⁶⁶⁾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⁶⁷⁾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⁶⁸⁾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66) 특허법 제66조

67) 특허법 제67조

68) 특허법 제78조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5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5회차 복습

.심사순위 - 출원순위, 우선심사신청

.1인 심사관 심사한계 협력제도 - 전문기관, 정보제공/이의신청

.심사 - step 1) 심사대상확정, step 2) 기통지 거절이유 극복 여부, step 3) 다른 거절이유 존재 여부

- 지정상품별 심사, 부분거절제도 有

.보정절차 - (주) 출원인, (기)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구분 (서) 보정서

- 요지변경시 : 보정각하결정 / miss 후 설정등록시 취급

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보정각하결정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확정시까지 출원에 대한 심사보류(거통, 거결, 출원공고결정 보류)	심사관은 심사보류 없이 심사진행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 불복 可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함께 불복 可
miss 후 설정등록	보정서 접수일 = 출원일	보정 무효
보정기간	거결 전, 출원공고결정 전	
	거결 후 거불심 청구일부터 30일, 거불심 단계에서 거통 의견서제출기간, 재심사청구기간	거결 후 거불심 청구일부터 30일, 거통 의견서제출기간/거불심 단계에서 거통 의견서제출기간, 재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 답변서제출기간

(심사기준) 요지변경인 경우의 처리

. 다음의 경우 심사관(심판관)은 출원인이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출원공고결정이나 거절이유통지, 등록여부결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정각하결정불복에 관한 심판(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i) 출원공고결정 전이나 거절이유의 통지 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ii)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iii)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결정된 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 의견서제출기간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심사관(심판관)은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심사(심판)을 중지함이 없이 계속한다.

(i) 출원공고된 후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ii) 출원공고된 후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iii) 출원공고된 후 거절결정된 출원(이의결정으로 거절된 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변경출원 - (주) 원출원인, (기)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분할출원 - (주) 원출원인, (기) 제40조, 제41조 보정기간,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분할이전출원 - (주) 이전 받은 자(승계인), (기) 출원 계속 중,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조약 우선권주장 - (주) 동맹국 국민 또는 재내자 + 기초출원인 또는 우주승계인, (기) 6개월, (서) 출원서 취지, 국가명, 연월일 / 출원일부터 3개월 증명서류, (기초출원) 최선성, 정규성

.출원시 특례 - (주) 박람회 출품자, (기) 출품일부터 6개월, (서) 출원서 취지, 출원일부터 30일 증명서류

cf) 특허법 학습자료 10회차, 심사관님 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_____에 따른다⁶⁹⁾.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⁷⁰⁾.

1. 상표등록출원 후 _____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_____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⁷¹⁾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⁷²⁾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⁷³⁾

출원의 순위, 출원인이 아닌 자, 사용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⁷⁴⁾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_____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_____에 대하여 _____하고 있거나 _____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_____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_____에 _____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9)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심사청구의 순위

70) 특허법 제61조

71) 특허법 제61조 제1호

72)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73) 특허법 제61조 제2호,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방녹4반수국 벤중직지 국조국출 합

74) 특허법 시행령 제9조

6. 조약에 따른 _____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_____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_____한 경우

8. 삭제

출원인, 전부, 사용, 사용할 준비, 출원인, 서면 경고, 출원인, 이의, 출원인, 서면 경고, 국제등록부, 등록, 우선권 주장의 기초, 존속기간 만료, 동일

상표법 시행령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⁷⁵⁾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⁷⁶⁾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⁷⁷⁾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⁷⁸⁾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_____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⁷⁹⁾으로 정하는 _____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____이나 상표에 관한 _____ 또는 _____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_____ 또는 _____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⁸⁰⁾으로 정한다.

등록, 전담기관, 관계 행정기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⁸¹⁾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_____에 해

75)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76) 특허법 제57조

77) 특허법 제58조

78) 상표법 시행령 제11조

79) 상표법 시행령 제11조의2

80) 상표법 시행령 제10조

81) 특허법 제58조의2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_____ 하여야 하며,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_____ 하거나 _____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_____를 명할 수 있다.

1. _____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_____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_____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_____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호, 취소, 제2호, 취소, 6개월 이내, 정지, 거짓, 등록, 등록기준, 청문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⁸²⁾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_____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_____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_____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_____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_____을 하거나 질의에 _____할 수 없다.

상표검색, 조정, 전자화업무, 온라인 원격근무, 감정, 증언, 응답

제49조(정보의 제공)⁸³⁾ _____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_____ 또는 _____에 게 제공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제56조(서류의 제출 등)⁸⁴⁾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⁸⁵⁾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부분거절제도).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82) 특허법 제217조

83) 특허법 제63조의2, 제170조 제1항

84) 특허법 제222조

85) 특허법 제62조, 출원일제원칙 vs 부분거절제도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 일부, 그 지정상품

제55조(거절이유통지)⁸⁶⁾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_____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⁸⁷⁾.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절차계속신청제도).

지정상품별, 2개월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_____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_____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_____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_____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_____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확정, 출원공고, 분할, 취소의 심결, 출원공고, 30일

제68조(상표등록결정)⁸⁸⁾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86) 특허법 제63조

87) 특허법 제63조 제2항, 청구항별 심사 vs 지정상품별 심사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_____ 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확정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⁸⁹⁾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⁹⁰⁾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_____.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_____.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59조(직권보정 등)⁹¹⁾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_____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_____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_____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_____ 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_____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_____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출원공고결정, 제40조제2항, 제57조제3항, 의견서, 처음부터, 취소, 제40조제2항, 명백히 잘못, 처음부터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⁹²⁾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_____를 발견한 경우에는 _____으로 상표등록결정을 _____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_____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_____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_____되거나 _____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_____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_____ 또는 _____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백한 거절이유, 직권, 취소, 제38조제1항, 등록, 취하, 포기, 받기 전, 제2호, 제3호, 처음부터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⁹³⁾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_____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

88) 특허법 제66조

89) 특허법 제67조

90) 특허법 제78조

91) 특허법 제66조의2

92) 특허법 제66조의3

93) 특허법 제67조의2

달받은 날부터 _____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_____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_____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_____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_____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_____할 수 없다.

거절결정, 3개월, 재심사, 제116조, 취소, 무효, 취하

절차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⁹⁴⁾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_____,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_____ 및 _____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_____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_____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_____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부터 _____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_____

요지, 기재사항, 지정상품, 상표, 재심사의 청구기간, 출원공고, 상표등록거절결정, 30일,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_____의 범위의 _____

2. _____의 정정 (잘못된 기재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_____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4. _____의 _____인 _____의 _____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_____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_____이 있을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를 제출한 때에 _____을 한 것으로 본다.

지정상품, 감축, 오기, 석명, 상표, 부기적, 부분, 삭제, 표장에 관한 설명, 설정등록, 보정서, 상표등록출원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_____ 및 _____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부터 _____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_____

94) 특허법 제47조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_____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_____이 있는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요지, 지정상품, 상표, 30일, 의견서 제출기간, 재심사의 청구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설정등록, 보정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_____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_____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 _____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_____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_____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_____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_____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정을 각하, 심판청구기간, 결정, 결정, 확정, 중지, 제41조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서 _____또는 거절결정을 _____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보정각하결정, 취소

제44조(출원의 변경)⁹⁵⁾⁹⁶⁾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_____등록출원

2. _____등록출원(_____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_____등록출원(_____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_____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_____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

95) 특허법 제53조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96) 특허: 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권리자출원

상표: 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변경출원(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재출원출원(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이전출원(상표, 업무표장)

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_____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_____⁹⁷⁾ 또는 _____⁹⁸⁾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⁹⁹⁾.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 상표, 최초, 제46조제3항·제4항, 제47조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_____ 또는 _____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_____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⑦ 제47조에 따른 _____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등록여부결정, 심결, 우선권 주장, 30일, 출원 시의 특례, 취하

제45조(출원의 분할)¹⁰⁰⁾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_____ 및 _____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제41조제1항 각 호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¹⁰¹⁾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_____(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7) 조약우선권주장 : 출원시 취지, 국가명, 연월일 표시 / 출원일부터 3개월 증명서류

98) 출원시 특례 : 출원시 취지 표시 / 출원일부터 30일 증명서류

99) 특허 : 확공조국

100) 특허법 제52조

101) 특허법 제54조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_____ 이 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 _____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_____, 최초로 출원한 _____ 및 출원 _____ 을 적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_____, _____ 및 _____ 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5조, 6개월, 출원 시, 국가명, 연월일,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지정상품, 3개월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_____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_____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개월, 출품을 한 때, 취지, 30일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상속, 일반승계, 출원인 변경신고, 지정상품마다, 유사한 지정상품, 동의



실현되는 가능성
변리사스쿨, 1차부터 2차까지!
우리와 함께라면 합격은 문제없습니다!



변리사스쿨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6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6회차 복습

.출원공고결정 - 손실보상청구권, 이의신청, 직권거절결정, 직권보정

.등록결정 - 직권재심사

.거절결정 - 재심사청구

.손실보상청구권 - 서면경고 → 경고 후 상표권 등록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 → 등록 후 행사 可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유 보정 → 답변서제출기회 → 심사 → 결정

.등록료 - 10년치(5년치 분할 可), ① 등록결정서 받은 날부터 2개월 ② 기간연장청구 ④ 보전기간 1개월 ③ 추후보완 2개월/1년, 반환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_____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_____의 등본이 _____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_____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_____에 대하여 _____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_____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거절결정이 확정, 출원공고결정, 출원인, 분할, 거절결정, 취소의 심결, 이미 출원공고, 30일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¹⁰²⁾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는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_____한 상표를 _____하는 자에게 _____으로 _____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_____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_____상표권을 _____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_____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102) 특허법 제65조 보상금청구권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_____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_____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사용, 서면, 경고, 출원의 사본, 출원공고 전, 경고 후, 설정등록, 업무상 손실, 설정등록 전, 상표권의 행사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¹⁰³⁾.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_____ 또는 _____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_____로 한다는 _____(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_____된 경우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이 확정, 무효, 심결, 확정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_____출원공고일부부터 _____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_____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누구든지, 30일, 지식재산처장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_____이 지난 후 _____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30일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_____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103) ex) 침해금지청구권(제107조), 손해액 추정(제110조), 법정손해배상(제111조), 고의 추정(제112조) 준용 x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심사관 3명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_____.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_____할 수 있는 기회를 주_____.

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 여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_____하거나 _____하여 심사·결정_____.

병합, 분리, 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_____에 대해서는 _____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_____에게도 상표등록_____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른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인, 거절결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_____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_____나 _____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답변서 제출, 지정상품, 이유, 증거, 각하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_____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_____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_____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_____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_____에게 상표등록_____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후, 직권, 거절결정, 결정, 이의신청인, 거절결정

등록료)

제72조(상표등록료) ①¹⁰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_____로 _____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¹⁰⁵⁾ _____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¹⁰⁶⁾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회, 분할, 이해관계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납부방법 등) ⑤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_____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_____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설정 _____(「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_____ 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 _____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

104) 특허법 제79조

105) 특허법 제80조

10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료): 최초 3년분, 3개월, 6개월 vs 상표: 등록료(10년분), 2개월, 분할, 등록일부터 5년

⑧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 _____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_____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유지료): 등록일, 1년분씩 vs 상표는 유지료 개념 x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_____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명령, 1개월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¹⁰⁷⁾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 _____(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_____에는 _____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107) 특허법 제215조의2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록료, 낼 때, 지정상품별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¹⁰⁸⁾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_____에 의하여 _____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구, 30일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¹⁰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원납부기간) 또는 제74조(연장신청)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보전기간 1월)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추후보완 2월, 1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¹¹⁰⁾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_____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_____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보전, 1개월, 2배의 범위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¹¹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_____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_____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_____이

108) 특허법 제81조 : 추가납부기간 6개월 vs 상표법 제74조 : 연장신청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추가납부기간 없음

109) 특허법 제81조 제3항

110) 특허법 제81조의2

111)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효력제한기간)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_____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2개월, 1년, 납부기간, 회복

제78조(수수료)¹¹²⁾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_____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_____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심사관, 면제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¹¹³⁾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_____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_____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_____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_____ 또는 _____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12) 특허법 제82조, 제83조

113) 특허법 제84조

청구, 2회차, 5년, 소멸, 포기, 납부한 자, 5년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7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7회차 복습

- .등록 - 상표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갱·전·추·처, 사용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처, 상표권의 질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소(혼동 제외)·처, 사용권의 질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처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 .동의 - 이(상속 등 제외)·사·질 : 위·옆으로 동의, 포 : 밑으로 동의
- .상표권 소멸 - 개인 상속인 부존재, 개인 3년 이내 상속인 이전등록 x, 법인 청산
- .법정사용권 - 저촉관계 존속기간만료, 선사용권, 경매
- .질권 - 사용권 無, 물상대위 可(단 압류 要)
- .상표권 내용 - 사용권 제한 有(전용사용권 설정, 저촉관계), 배타권 제한 有(제90조, 효력제한기간 2개, 법정사
용권 3개)

등록원부 등록)

제80조(상표원부)¹¹⁴⁾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¹¹⁵⁾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¹¹⁶⁾ ① 상표권은 _____에 의하여 _____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14) 특허법 제85조

115) 특허법 제86조

116) 특허법 제87조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_____를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발생, 등록공고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¹¹⁷⁾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_____(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 _____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_____, 상품분류 _____, 지정상품의 _____ 또는 _____의 제한
2.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_____· _____(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 _____(권리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_____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갱신, 전환, 추가, 처분, 상표권,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소멸, 혼동, 처분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¹¹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_____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_____· _____(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_____의 제한
2. _____ 또는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_____· _____(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_____의 제한
-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항,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처분,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처분

내용)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¹¹⁹⁾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_____에 적은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_____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_____에 따라 정해진다.

117) 특허법 제101조

118) 특허법 제118조

119) 특허법 제97조

출원서, 상표, 출원서, 상품

제89조(상표권의 효력)¹²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_____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_____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사용권자, 독점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¹²¹⁾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 _____에 출원된 타인의 _____ 또는 그 상표등록 _____에 발생한 타인의 _____과 _____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_____에 해당하는 경우¹²²⁾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출원일 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출원일 전, 저작권, 저촉, 부정경쟁행위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¹²³⁾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_____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_____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_____ 또는 _____ 또는 _____ 및 _____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성명, 명칭, 상거래 관행,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보통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_____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_____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_____하는 상표와 _____ 및 그 _____ 또는 _____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_____을 확보하는 데 _____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

120) 특허법 제94조

121) 특허법 제98조

122)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23) 특허법 제96조

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 _____는 상표권의 설정 _____이 있는 후에 _____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체적 형상, 식별, 관용,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기능, 불가결한, 제1호, 등록, 부정경쟁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¹²⁴⁾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냐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¹²⁵⁾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¹²⁶⁾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

124) 특허법 제105조

125) 특허법 제103조

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¹²⁷⁾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_____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납부기간, 회복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¹²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_____이 _____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_____¹²⁹⁾ 전에 _____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_____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_____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_____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 확정, 등록, 선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

존속기간갱신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¹³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_____이 있는 날부터 _____으로 한다.

- ②¹³¹⁾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_____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설정등록, 10년, 10년씩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_____(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_____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특허법 제122조

127)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128) 특허법 제181조

129) 특허법 제181조 제1항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160조의 “상표권의 등록”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130) 특허법 제88조 :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 출원일 후 10년

131)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_____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_____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권자, 각 공유자, 1년, 6개월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 _____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_____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_____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_____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갱신, 원등록, 다음 날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¹³²⁾를 준용한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_____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_____(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_____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상표권자, 각 공유자

등의)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_____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_____을 _____하거나 그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132)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_____에 대하여 _____ 또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지정상품, 유사, 동의, 지분, 양도, 지분, 질권, 동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_____별로 분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지정상품

제95조(전용사용권) ① _____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_____ 또는 _____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전용사용권자는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 ⑥ 전용사용권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하거나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상표권자, 성명, 명칭, 상속, 일반승계, 상표권자, 동의, 이전, 상표권자, 동의, 질권, 통상사용권

제97조(통상사용권) ① _____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통상사용권은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말한다)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_____할 수 없다.
- ④ 통상사용권은 _____(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말한다)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상표권자, 상속, 일반승계, 상표권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의, 이전, 상표권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의, 질권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_____마다 포기할 수 있다.

지정상품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_____ 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_____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_____ 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 동의, 포기, 질권자, 통상사용권자, 동의, 포기, 질권자, 동의, 포기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_____ 소멸된다.

그때부터

소멸)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_____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의 _____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_____된 때 _____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_____(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_____과 _____부터 _____이 지난 날 중 _____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_____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_____에 소멸된다.

3년, 이전등록, 3년, 다음 날, 개시, 상속인, 청산종결등기일, 사실상 끝난 날, 청산종결등기일, 6개월, 빠른 날, 이전등록, 다음 날

사용권)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냐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권)

제104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_____.

할 수 없다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_____하여야 한다.

압류

상품분류전환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종전의 법(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20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214조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지정상품추가등록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¹³³⁾ ① _____ 또는 _____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_____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_____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¹³⁴⁾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상표권자, 출원인, 등록상표권, 추가등록출원서, 지식재산처장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¹³⁵⁾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_____ 또는 _____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_____

나. 상표등록출원의 _____, _____ 또는 _____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_____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33) 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변경출원(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재출원출원(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이전출원(상표, 업무표장)

134) 1호: 출원인 성명 및 주소

2호: 대리인 성명 및 주소

(3호: 상표, 4호: 지정상품 및 상품류)

5호: 조약우선권 주장(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6호: 그 밖에 총리령(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으로 정하는 사항

135) 출원 거절이유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_____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_____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이 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_____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일부, 그 지정상품, 상표권자, 출원인, 소멸,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 거절이유, 거절결정, 직권 재심사, 2개월, 지정상품별

제88조(준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8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8회차 복습

.배타권 침해 – 민사조치, 형사조치

.심판절차 개괄

배타권 침해)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1. 포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민사조치)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¹³⁶⁾ ① _____ 또는 _____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_____ 또는 _____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_____의 _____, 침해행위에 제공된 _____의 _____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¹³⁷⁾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_____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_____,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_____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_____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금지, 예방, 물건, 폐기, 설비, 제거, 신청, 금지, 압류, 담보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¹³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_____ 또는 _____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과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_____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_____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_____.

1. 그 상품의 _____(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양도, 합계액, 할 수 있다, 양도수량, 침해행위 외, 생산, 판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이익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_____수량 또는 그 _____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_____의 설정, _____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_____의

136) 특허법 제126조

137)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138) 특허법 제128조 제1항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_____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넘는, 침해행위 외,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 해당 수량, 합리적

② 삭제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_____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_____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 _____.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_____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_____ 또는 _____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_____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_의 취지와 _____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익액, 추정, 합리적, 할 수 있다, 초과액, 고의, 중대한 과실, 고려, 변론전체, 증거조사

⑦ 법원은 _____적으로¹³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_____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¹⁴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고의, 동일유사, 동일유사, 5배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¹⁴¹⁾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_____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_____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_____나 _____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_____(_____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_____의 취지와 _____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139)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40)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5배

141)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는 법원이 _____을 _____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동일성, 동일성, 고의, 과실, 1억원, 고의, 3억원, 변론전체, 증거조사, 변론, 종결

제112조(고의의 추정)¹⁴²⁾ 제222조에 따라 _____임을 _____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한다.

등록상표, 표시, 추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_____에 의하여 _____을 _____하거나 _____과 _____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_____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구, 손해배상, 갈음, 손해배상, 함께, 신용회복

제114조(서류의 제출)¹⁴³⁾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_____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_____의 _____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손해, 서류, 제출, 정당한 이유

형사조치)

제230조(침해죄)¹⁴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1억원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_____·_____ 또는 _____(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_____ 또는 _____는 _____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_____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_____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표, 포장, 상품, 제작 용구, 재료, 몰수, 쉽게 분리, 상품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_____, _____ 또는 _____이 _____에 대하여 _____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_____이하의 징역 또는 _____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_____에 _____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_____하거나 _____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특허심판원, 거짓, 5년, 5천만원, 확정 전, 자수, 감경, 면제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¹⁴⁵⁾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_____이하의 징역 또는 _____이하의

142) 특허법 제130조 : 과실추정

143) 특허법 제132조 :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제128조의2 : 감정사항 설명의무

144) 특허법 : 침비위허거비 / 상표법 : 침 위허거비 (상표는 비밀누설죄 없음)

145) 특허법에서는 허위표시죄라 명칭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만원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_____ 또는 _____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포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록상표, 등록출원상표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5조제3항(전용사용권), 제97조제2항(통상사용권), 제104조(질권), 제110조제4항(손해액의 추정 등),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취소)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및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_____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_____나 _____의 _____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색채, 색채, 색채, 조합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_____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_____등록, _____의 _____등록, _____등록, _____등록 또는 _____을 받은 자는 _____이하의 징역 또는 _____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상표, 지정상품, 추가, 존속기간갱신, 상품분류전환, 심결, 3년, 3천만원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_____에서 _____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_____이하의 징역 또는 _____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_____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외, 정당한 사유, 5년, 5천만원, 고소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¹⁴⁶⁾, 제233조¹⁴⁷⁾ 또는 제234조¹⁴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_____에게는 _____의 벌

146) 침해죄

147) 거짓표시죄(허위표시죄)

148) 거짓행위죄

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와 _____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_____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_____ 이하의 벌금

법인, 개인, 해당 조문, 상당한 주의, 감독, 3억원, 6천만원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_____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당사자신문)에 따라 선서를 한 사
람(=당사자)으로서 _____에 대하여 _____ 진술을 한 사람
2. _____으로부터 _____ 또는 _____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의 _____ 또는 _____ 명령을 받은 자로서 _____ 없이 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3. _____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_____ 없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_____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이 부과·징수한다.

50만원, 특허심판원, 거짓,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증거보전, 제출, 제시, 정당한 이유, 특허심판원, 정당한 이유,
거부, 지식재산처장

심판)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¹⁴⁹⁾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 _____.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_____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_____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_____
4. 제121조에 따른 _____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_____

-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_____를 피청구인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
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_____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
이 있을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있다, 무효심판, 취소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모두, 모두, 모두

제124조의2(국선대리인)¹⁵⁰⁾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대
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_____이 명백하거나
_____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_____할 수 있다.

-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청, 이유 없음, 권리의 남용, 감면

149) 특허법 제139조

150) 특허법 제139조의2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¹⁵¹⁾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_____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의 표시
4. _____ 및 그 _____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_____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_____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_____를 보정하는 경우
3. _____ 또는 _____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_____에
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_____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_____하기 위하
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건본 및 그 사용상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 청구의 취지, 이유, 요지, 상표권자, 청구의 이유,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권리범위
확인심판, 피청구인, 같게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¹⁵²⁾ ① 제115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
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및 _____
4. _____ 및 그 _____
5. 심사관의 _____ 또는 _____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_____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_____에게 알려야 한다.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출원일, 출원번호, 지정상품, 상품류, 거절결정일, 보정각하결정일,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151) 특허법 제140조

152) 특허법 제140조의2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¹⁵³⁾ ①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_____하고 _____한 경우에는 _____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26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5조제2항 또는 제1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_____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_____으로 _____하여야 한다.

심판장, 경미, 명확, 직권, 서, 결정, 각하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_____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_____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청구인, 7일, 의견서, 심판장, 처음, 명백히 잘못, 처음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¹⁵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_____에게 _____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제129조(심판관)¹⁵⁵⁾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0조(심판관의 지정)¹⁵⁶⁾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_____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심판관

제131조(심판장)¹⁵⁷⁾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153) 특허법 제141조

154) 특허법 제142조

155) 특허법 제143조

156) 특허법 제144조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_____를 _____한다.

사무, 총괄

제132조(심판의 합의체)¹⁵⁸⁾ ① 심판은 _____ 또는 _____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명, 5명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¹⁵⁹⁾ ① _____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_____에
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심판장, 피청구인, 답변서

제134조(심판관의 제척)¹⁶⁰⁾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_____ 또는 그 _____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
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_____, _____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_____결정이나 _____에
대한 결정 또는 _____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_____를 가진 경우

심판관,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 상표등록여부, 이의신청, 심결, 이해관계

제135조(제척신청)¹⁶¹⁾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_____을 할
수 있다.

제척신청

제136조(심판관의 기피)¹⁶²⁾ ① 심판관에게 _____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_____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_____ 또는 _____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_____. 다만, _____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_____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 기피신청, 서면, 말, 할 수 없다, 기피의 원인, 그 후에 발생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¹⁶³⁾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

157) 특허법 제145조

158) 특허법 제146조

159) 특허법 제147조

160) 특허법 제148조

161) 특허법 제149조

162) 특허법 제150조

163) 특허법 제151조

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_____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말, 3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¹⁶⁴⁾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_____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_____할 수 없다. 다만, _____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_____.

심판, 관여, 의견, 할 수 없다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¹⁶⁵⁾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_____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__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지, 긴급

제140조(심판관의 회피)¹⁶⁶⁾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_____할 수 있다.

회피

제141조(심리 등)¹⁶⁷⁾ ① 심판은 _____심리 또는 _____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_____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_____ 또는 _____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구술, 서면, 신청,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¹⁶⁸⁾ ① _____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_____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64) 특허법 제152조

165) 특허법 제153조

166) 특허법 제153조의2

167) 특허법 제154조

168) 특허법 제154조의3, 상표법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특허법 제154조의2) 없음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_____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심판장, 의견서, 의견진술

- 제142조(참가)¹⁶⁹⁾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_____가 _____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당사자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_____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_____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보조참가인)은 모든 _____를 밟을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_____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리, 종결, 취하, 이해관계, 심판절차, 피참가인

-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¹⁷⁰⁾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_____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_____.

심판장, 의견서, 심판, 할 수 없다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¹⁷¹⁾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_____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_____에게 하여야 한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청, 직권,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의견서

- 제145조(심판의 진행)¹⁷²⁾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_____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_____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

169) 특허법 제155조

170) 특허법 제156조

171) 특허법 제157조

172) 특허법 제158조

절차, 출석, 할 수 있다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¹⁷³⁾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직권심리)¹⁷⁴⁾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대해서도 심리 _____을.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_____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유, 할 수 있다, 의견, 청구의 취지

제147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¹⁷⁵⁾ 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 _____.

할 수 있다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¹⁷⁶⁾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_____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 제1항에 따른 _____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_____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¹⁷⁷⁾이나 제117조 제1항(상표등록 무효), 제11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 또는 제214조제1항(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에 따른 _____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_____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확정, 답변서, 동의, 거절결정, 무효, 지정상품, 처음

제149조(심결)¹⁷⁸⁾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_____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173) 특허법 제158조의2

174) 특허법 제159조

175) 특허법 제160조, 특허법에는 심판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심판관과 심판관합의체는 구분할 필요 없음

176) 특허법 제161조

177) 특허법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항별 취하 不可, 특허법에서는 특취, 특무, 권확만 청구항별 취하 可

178) 특허법 제162조

-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심리를 _____할 수 있다.
-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_____, _____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_____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리의 종결, 신청, 직권, 재개, 당사자, 참가인, 거부

제150조(일사부재리)¹⁷⁹⁾ 이 법에 따른 심판의 _____이 _____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_____같은 _____및 같은 _____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_____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결, 확정, 누구든지, 사실, 증거, 각하심결

제151조(소송과의 관계)¹⁸⁰⁾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_____ 또는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
_____.

-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_____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_____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 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_____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_____, _____ 또는 청구의 _____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권, 신청,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끝난, 법원, 각하결정, 심결, 취하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¹⁸¹⁾ ① _____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_____하고 _____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_____.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_____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_____된 것으로 본다.

심판장, 동의, 중지, 결정, 할 수 있다, 취소, 취하

제152조(심판비용)¹⁸²⁾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_____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_____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15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또는 제116조(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비용은 _____이

179) 특허법 제163조

180) 특허법 제164조

181) 특허법 제164조의2

182) 특허법 제165조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_____ 된 후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_____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부담, 심결, 결정, 청구인, 확정, 청구, 특허심판원장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¹⁸³⁾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특허심판원

재심)

제157조(재심의 청구)¹⁸⁴⁾ ① 당사자는 _____ 된 _____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¹⁸⁵⁾을 준용한다.

확정, 심결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¹⁸⁶⁾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_____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_____를 _____으로 한다.

손해, 당사자, 공동피청구인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¹⁸⁷⁾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_____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_____ 또는 _____이 심결 등본의 _____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_____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 사유가 심결 _____ 후에 생겼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_____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_____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일, 청구인, 법정대리인, 송달, 다음 날, 3년, 확정, 다음 날, 저촉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¹⁸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

183) 특허법 제166조

184) 특허법 제178조

185) 특허법 제185조

186) 특허법 제179조

187) 특허법 제180조

188) 특허법 제181조, 특허법에는 법정실시권이 추가로 있음(특허법 제182조, 제183조)

은 해당 _____이 _____된 후 그 회복된 _____의 _____ 전에
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
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
우

심결, 확정, 상표권, 등록, 선의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¹⁸⁹⁾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결취소소송)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¹⁹⁰⁾ ① _____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_____, _____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
였으나 그 신청이 _____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_____은 도서·벽지 등 _____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_____을 정할 수 있다.
-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_____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심판전
치주의).
-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_____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
를 제기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_____에 _____할 수 있다.

심결, 각하결정, 당사자, 참가인, 거부, 30일, 심판장, 교통, 부가기간, 심결, 심판비용, 대법원, 상고

제163조(피고적격)¹⁹¹⁾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_____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
만, 제117조제1항(상표등록 무효심판), 제11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제119조제1항·제2항(상표등
록 취소심판), 제120조제1항(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제214조제1항(상품분류전환등
록 무효심판)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_____에 대한 소는 그 _____ 또는
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심결, 청구인, 피청구인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보 송부)¹⁹²⁾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_____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_____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지식재산처장이 피고가 아닌 경우)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

189) 특허법 제184조

190) 특허법 제186조

191) 특허법 제187조

192) 특허법 제188조

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_____ 정본을 _____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 제기, 상고, 특허심판원장, 재판서, 특허심판원장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¹⁹³⁾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_____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_____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_____되었을 경우에는 _____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_____한다.

판결, 취소, 확정, 다시 심리, 기속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¹⁹⁴⁾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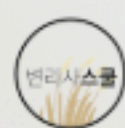
193) 특허법 제189조
194) 특허법 제191조의2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1위인 이유

1차부터 2차까지 전 과정 압도적 등록률!
체계적 로드맵으로 변리사 되는 가장 완벽한 통합 솔루션

< 변리사스쿨 1,2차 통합종합반 >



변리사스쿨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9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9회차 복습

.절차 - 당사자계 절차개괄: 심판청구 → 담당심판부 지정 → 방식 → 답변서제출기회 → 심리(당사자, 직권) / side 절차 → 심리종결 → 심결 → 특허법원 불복 / 확정 후 재심

결정계 절차개괄: 답변서제출기회 x, 참가신청 x

.당사자계 심판 - 상표취소심판, 사용권취소심판, 상표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결정계 심판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불복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_____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 _____ 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_____ 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_____ 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_____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기간, 등록여부결정, 출원공고결정, 확정, 중지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_____ 등록거절결정, _____ 등록 거절결정 또는 _____ 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_____ (지정상품마다)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지정상품추가, 상품분류전환, 3개월, 일부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_____ 은 당사자의 _____ 에 의하여 또는 _____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_____ 이내에서 _____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_____ 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지식재산처장, 청구, 직권, 30일, 한 차례, 교통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2개월, 1년,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제42조(보정각하), 제45조(분할출원),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7조부터 제68조(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직권보정, 이의신청, 등록결정)까지, 제87조제2항·제3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 및 제210조제2항·제3항(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출원공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제5항,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87조제2항·제3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 및 제210조제2항·제3항(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 _____의 이유와 _____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거절결정, 다른 거절이유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제2항(답변서제출기회), 제142조 및 제143조(참가신청)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____로써 _____ 또는 _____을 _____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_____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_____한다.

심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취소, 심사, 취소의 기본, 기속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 제156조에 따라 _____ 또는 _____이 _____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_____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_____(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취소, 보정, 심판청구료

무효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_____ 등록 또는 _____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제27조(외국인 권리능력), 제33조부터 제35조(식별력 7개, 21개+③, 선원주의)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출원 승계 등), 제54조제1호(성립성)·제2호(조약反) 및 제4호부터 제7호(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등록 받을 수 있는 자, 정관·규약 관련)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제54조 거절이유 중 제38조제1항 1상표 1출원 제외)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_____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원 상표권 소멸, 원 출원 무효·취하·포기·거절확정)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_____된 후 그 상표권자가 _____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_____에 위반된 경우
6. _____된 후 그 등록상표가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____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_____되거나 _____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해관계인, 심사관, 상표, 지정상품의 추가, 지정상품, 승계, 상표등록, 제27조, 조약, 상표등록, 제33조제1항, 등록, 보호가 중단, 사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_____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후발적 무효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_____에 _____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_____에 _____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_____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멸된 후, 처음부터, 같은 호, 해당, 등록원부, 공시, 전용사용권자, 등록된 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_____(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_____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지정상품, 상표권자, 공유자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지정상품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¹⁹⁵⁾, 제35조(선원주의), 제118조제1항제1호(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 및 제214조제1항제3호(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_____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년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_____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_____마다 심판청구를 _____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거절결정, 무효심판, 지정상품, 취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_____가 _____로 _____에 등록상표와 _____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_____에 _____ 또는 이와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려일으키게 한 경우

상표권자, 고의, 지정상품, 유사한 상표, 유사한 상품,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2. _____ 또는 _____가 _____ 또는 이와 _____

195) 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포함

7호, 8호: 선출원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와 동일·유사

9호, 10호: 주지상표(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

16호: 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포함

_____에 _____ 또는 이와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_____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대신 제120조 취소심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지정상품, 유사한 상품,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상표권자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_____ 없이 _____를 그 _____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_____ 이상 _____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 등록상표, 지정상품, 3년, 국내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상표권 승계 등)에 위반된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_____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_____에 _____을 목적으로 자기의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유사한 등록상표, 동일유사, 상품, 부정경쟁, 등록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_____에 _____을 목적으로 자기의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¹⁹⁶⁾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성과 만든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_____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동일유사, 상품, 부정경쟁, 등록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5년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96)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_____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_____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_____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같은 항 _____ 및 _____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_____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_____ 및 _____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_____만이 청구할 수 있다.
-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_____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_____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_____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피청구인, 하나 이상, 정당한 이유, 제4호, 제6호, 누구든지, 제4호, 제6호, 이해관계인, 그때부터, 심판청구일, 통지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_____ 또는 _____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품질오인·혼동)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 제122조(제척기간) ② 제119조제1항제1호(상표권자 품질오인·혼동)·제2호(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제5호(상표권

이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제5호의2(상표공존제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제7호부터 제9호(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관련)까지 및 제120조제1항(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년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¹⁹⁷⁾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_____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_____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_이 _____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_____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_____이 _____된 경우

청구일, 3년, 존속기간, 만료, 포기, 심결,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지정상품

197) 1호: 상표권자 품질오인·혼동
 2호: 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
 5호: 상표권 이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5호의2: 상표공존제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3호: 불사용취소
 6호: 상표권 승계 등
 7호 내지 9호: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관련



조현중 상표법 학습자료 10회차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¹⁹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¹⁹⁹⁾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²⁰⁰⁾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198)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자기의 상품에 직접 사용 可 vs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자기의 상품에 사용 不可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만 사용 可)

199)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법인만 등록 可 vs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법인 or 개인 등록 可

200)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상표법 시행령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상표법 시행령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지리적표시 정의와 일치함 증명서류)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지리적표시 정의와 일치함 증명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FTA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²⁰¹⁾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²⁰²⁾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201)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각 법에 따라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 FTA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 사용을 보장하고,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주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제44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²⁰³⁾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²⁰³⁾한다)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⁰⁴⁾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 不可

204)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표장)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출원의 변경)²⁰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5) 업무표장등록출원은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 등 영리와 관련된 다른 출원으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5조(전용사용권)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²⁰⁶⁾·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²⁰⁷⁾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²⁰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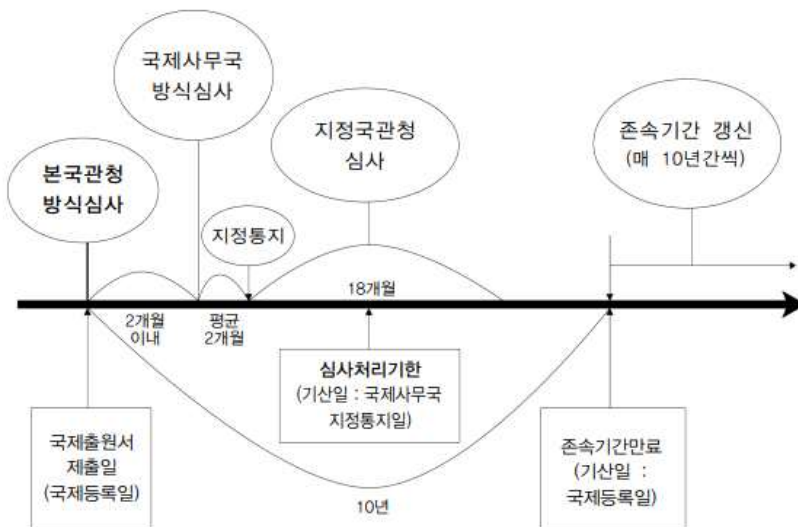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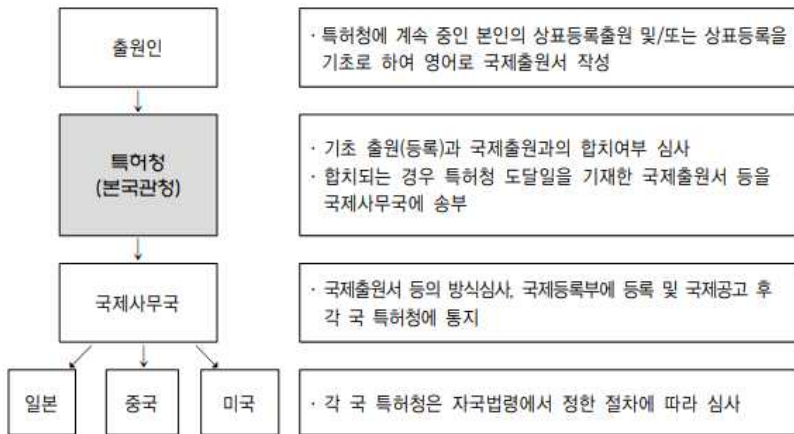
206) 업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 설정 不可

207) 업무표장등록출원 이전 제한 규정 위반시 거절이유, 무효사유 vs 업무표장권 이전 제한 규정 위반시 취소사유

208) 업무표장은 국제조약이나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특유 제도이므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은 업무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i) 업무표장등록출원은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출원의 변경(상표로)이 허용되지 않는다.
 - ii) 업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다(법§48⑥1, §법93④).
 - iii) 업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법§95②, 법§97⑤).
 - iv)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법§93⑧).
- * 업무표장등록출원이 이전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거절이유 및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법§54-3, 법§117①1), 업무표장권의 이전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법§119①4)

국제출원 part 1²⁰⁹⁾



제167조(국제출원)²¹⁰⁾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 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

209)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국 한국 포함 국제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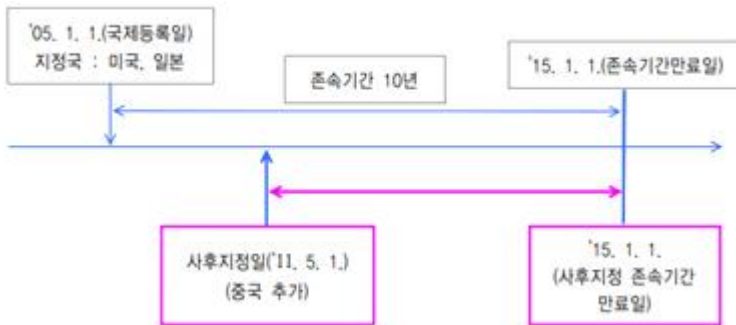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

본국관청: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지식재산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송부하는 업무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각종 하자통지에 대한 대응 업무 담당. 특히 국제출원이 기초출원(등록)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 기초출원(등록)의 소멸이 있는 경우 그 소멸사함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업무도 담당.

지정국관청: 지정국 지식재산처

210) 기초출원·등록: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지정국가 추가사례)



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²¹¹⁾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²¹²⁾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²¹³⁾으로 정하는 사항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²¹⁴⁾.

211) 특허법 제192조·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내국인, 재내자, 내국인·재내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자, 내국인·재내자와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212) 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 영어 vs 특허법 제193조·특허법 시행규칙 91조: 국어, 영어, 일본어

213) 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214) 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²¹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²¹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²¹⁷⁾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²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7조(절차의 무효)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15)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216)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

217)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218)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 part 4)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²¹⁹⁾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²²⁰⁾·제3항²²¹⁾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²²²⁾·제4항²²³⁾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²⁴⁾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²²⁵⁾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²²⁶⁾²²⁷⁾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삭제

219) 특허법 제199조

220)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정관 요약서

221) 정관

222)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정관 or 규약 요약서

223) 정관 or 규약, 증명할 수 있음 증명서류

224)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or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3개월

225) 상표법 시행령 제17조·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 증명서류

226)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227) 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등으로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가 소멸된 경우(취소사유 중 제4호 제외),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이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²²⁸⁾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²²⁹⁾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²³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²³¹⁾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²³²⁾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재심사 청구기간), 같은 조 제2항제4호(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재심사 청구기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²³³⁾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

228) 영역확장 효력일 = 국제등록일 or 사후지정일

229) 마드리드의정서 제4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1) 계약당사자의 관청에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상인 표장이 국제등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양 등록이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지역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i)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제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상기 계약당사자에게 확장되어야 하고,
(ii)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전부가 상기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에서도 열거되어 있어야 하며,
(iii) 그러한 확장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신청이 있을 때 국제등록에 관한 그 관청의 등록원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30)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231)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적이 없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최소한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 한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232) 국제출원제도는 지정국(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표장을 보정할 수 없다.

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²³⁴⁾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²³⁵⁾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²³⁶⁾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²³⁷⁾ 및 제5항²³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출원시 특례)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³⁹⁾ 내에"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우선심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거절이유통지)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2월 내 절차계속신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⁴⁰⁾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²⁴¹⁾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

233)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요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234)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이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요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235) 출원인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236)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237)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8)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239) 상표법 시행규칙 제90조,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3개월

240)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14개월

241)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등록결정)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⁴²⁾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출원공고결정할 때 직권보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²⁴³⁾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²⁴⁴⁾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제196조(상표원부예의 등록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상표원부)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상표권 설정등록)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242)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18개월

243)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4) 제72조(상표등록료),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²⁴⁵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²⁴⁶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및 제88조제2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준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삭제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²⁴⁷(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²⁴⁸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²⁴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²⁵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또는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45)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46)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효력), 제8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에 관한 준용),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247) 이변포갱전추처: 등록: 효력발생요건

248)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9)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50)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²⁵¹⁾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재출원).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제207조(심사의 특례)²⁵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거절결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7조(출원공고결정) 및 제60조부터 제67조(이의신청, 출원공고 후 직권 거절결정)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조약 위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

251) Central attack

국제등록은 본국관청의 기초등록(기초출원)이 각 지정국으로 그 보호의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등록의 효력은 기초등록(기초출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이라 하고 종속기간은 5년이다. 즉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기초출원)이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지정국에서 당해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본국관청의 기초등록이나 기초출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거절 또는 무효시킴으로써 모든 지정국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 Central attack 이라 한다.

252) case 1) 국제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이미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던 것이므로 재출원에 대한 요건심사만 실시하고 실체심사나 출원공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등록결정을 한다.

case 2) 국제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하되 재출원에 대한 출원일만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되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시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양도적 개선책 그 이유가 있다

경험 있는 수험생일수록, 결국 다시 찾는 기득 맞춤 종합 전략.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최종합격까지 완주

< 변리사스쿨 2차 기득종합반 >



변리사스쿨

디자인보호법 조문 빈칸



변리사스쿨

생동차합격! 한번에 끝내는 혁신

< 변리사스쿨 2차 동차종합반 >



변리사스쿨

0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____ [물품의 ____, ____ 및 ____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____ 한 것으로서 ____ 을 통하여 ____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____ (____, ____ 및 ____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____ 등[____ 하고, 화상의 ____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1) 또는 ____ 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____ (양도나 대여를 위한 ____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____ · ____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____ 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____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____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____ 를 ____ · ____ · ____ · ____ 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____ (양도나 대여를 위한 ____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1) 특허법 2iii와 달리 ‘수출’ 포함.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²⁾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³⁾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_____,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⁵⁾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_____,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⁶⁾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⁷⁾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 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_____ 또는 제120조(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⁹⁾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2) 특허법 33

3) 특허법 3

4) 특허법 3② 에는 특허취소신청 절차가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취소신청 절차 없다. 대신 특허법에는 없는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5) 특허법 4 에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다. 대신 특허법에는 없는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6) 특허법 5

7) 특허법 6 출__특신청__불복 中 디자인보호법에는 __숙기간연장제도와 국내__선권주장이 없다.

8) 특허법 7

9) 특허법 7-2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¹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¹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¹²⁾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¹³⁾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_____¹⁴⁾

5. _____(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0) 특허법 8

11) 특허법 9

12) 특허법 10

13) 특허법 11

14)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¹⁵⁾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¹⁶⁾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¹⁷⁾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の日制定에 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¹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_____

_____¹⁹⁾, _____(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또는 제120조(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²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15) 특허법 12

16) 특허법 13

17) 특허법 14

18) 특허법 15

19) (디자인보호법 69)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vs (상표법 61)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은 _____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20) 특허법 16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²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또는 제120조(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²²⁾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²³⁾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²⁴⁾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²⁵⁾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²⁶⁾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21) 특허법 17

22) 특허법 18

23) 특허법 19

24) 특허법 20

25) 특허법 21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²⁷⁾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²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²⁹⁾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³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 특허법 22

27) 특허법 23

28) 특허법 24

29) 특허법 25

30) 특허법 28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³¹⁾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³²⁾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³³⁾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1) 특허법 28-2

32) 특허법 28-3

33) 특허법 28-4

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³⁴⁾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Ch.1 절차총칙	특허	디자인
방식	본인 능력	동일
	대리인 능력	동일
	서류 - 작성, 제출, 송달	동일
	기간 - 계산, 연장등, 추후보완, 정지	동일
	수수료	동일
	반려/절차무효	동일
권리이전시 절차속행/효력승계		동일
절차 취하/포기		동일

34) 특허법 28-5

제 2 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³⁵⁾ ① _____³⁶⁾ _____³⁷⁾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³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_____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³⁹⁾.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_____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출원공개신청), 제56조(거결·기각심결 확정 출원공개) 또는 제90조제3항(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⁴⁰⁾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_____에 표현된 디자인의 _____와 동일하거나 _____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_____⁴¹⁾.

특허법 제29조 제3항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35) 특허법 29

36) 공업상 이용가능성 反 - 도면 기재불비

37) 성립성(2 i, ii, ii-2)

38) 신규성

39) 창작성

40) 디자인공보에는 등록디자인공보(등록공고할 때의 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출원공개할 때의 공보)가 있음(시행령 10).

41) 확대된 선원, 특허법: 최명도에 확선티위 인정, 확선티위와 동일 여부 판단, 발명자 or 출원인(후출원시) 동일 시 적용x vs 디자인보호법: 출원서·도면에 확선티위 인정, 확선티위의 일부와 동일·유사 여부 판단, 출원인 동일 시 적용x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⁴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 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 국장(國章), 군기(軍旗), ____,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_____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_____가 있는 디자인
3. _____와 관련된 물품과 ____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____을 확보하는 데에 _____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⁴³⁾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 _____(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____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_____에 _____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_____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_____.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_____(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_____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⁴⁴⁾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

② 삭제

주체	출원인
기간	12개월 이내 출원
서면	아무 때나 증명서류 제출

42) 특허법 32: 공서양속反, 공중 위생 해칠 우려

43)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44) 특허법 30

특허법 제30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외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_____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_____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_____(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_____(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_____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_____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_____
2. _____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_____ 또는 _____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⁴⁵⁾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_____출원할 수 있다.

45) 시행규칙 38③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⁴⁶⁾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_____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 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_____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_____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_____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_____.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_____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 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_____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_____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

상표법 제37조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46) 특허법 42-2, 특허법에는 보완명령 제도 없다.

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39조(공동출원)⁴⁷⁾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⁴⁸⁾.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⁴⁹⁾.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⁵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_____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⁵¹⁾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_____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⁵²⁾으로 정한다.

제43조(비밀디자인)⁵³⁾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_____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_____.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_____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_____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_____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_____에 의하여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_____.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_____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_____,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의 _____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_____한 경우
4. _____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_____.

⑥ 제52조에 따른 _____.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⁵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

47) 특허법 44

48) 특허법 45

49) 물품 미기재: 반려사유(시규24①) vs 물품 오기재: 거절이유(40②)

50)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51)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52) 시행규칙 38④

53)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⁵⁵⁾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_____ 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_____ 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체	정당권리자
기간	무권리자 출원 후 3①本 反 거절·거불심 기각심결·취소결정·무효심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출원
서면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

제46조(선출원)⁵⁶⁾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선출원주의 적용 유형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완성품	완성품
부품	부품
한 벌의 물품	한 벌의 물품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54) 특허법 34

55) 특허법 35

56) 특허법 36

* 동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동적디자인과만 선출원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적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경우에는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관련디자인 적용 유형

기본디자인(A): 동일자 or 선출원	관련디자인(A'): 동일자 or 후출원
완성품	완성품
부품	부품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등록된 A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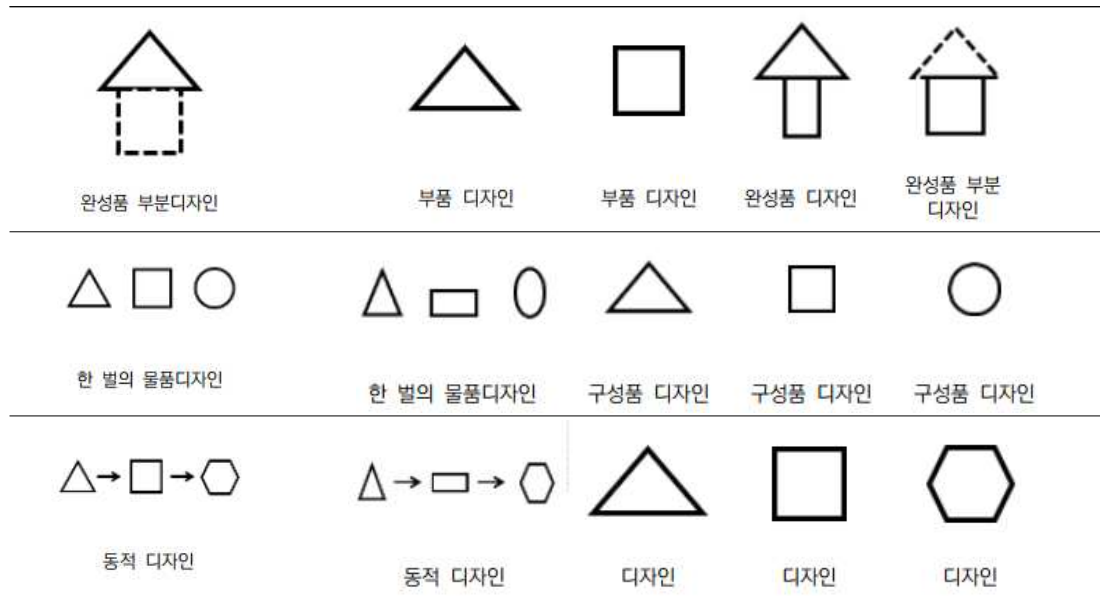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완성품	부품
완성품	부분디자인
부품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한 별의 물품	구성물품
합성물	구성각편

*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이 디자인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거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결정되어 공보에 게재된 경우, 선출원 디자인이 출원공개 등이 되기 이전에 출원된 후출원 디자인(a, a')은 확대된 선출원으로 거절결정한다.

신규성 적용 유형

공지디자인	출원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부분 디자인 부품 디자인



제47조(절차의 보정)⁵⁷⁾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또는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⁵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으로, _____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으로, _____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제62조에 따른 _____ 또는 제65조에 따른 _____(이하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이라 한다)의 _____까지
2. 제64조에 따른 _____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_____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_____.

57) 특허법 46

58) 특허법 47

주체	출원인
기간	등록여부결정 전, 재심사 청구기간, 거불심 청구일부터 30일, 거불심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124①)
서면	보정서

상표법 제40조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설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⁵⁹⁾ ① _____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_____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_____.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_____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_____.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⁶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_____한 자
2. _____을 한 자

59) 특허법 51

60) 특허법 52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_____ . 다만, 제51조제3항(조약우선권주장 취지, 국가명, 연월일 표시) 및 제4항(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⁶¹⁾.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_____ 에 할 수 있다.

④⁶²⁾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우선권주장 자동승계).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주제	원출원인
기간	원출원의 보정기간
서면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⁶³⁾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_____ ⁶⁴⁾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 _____ ⁶⁵⁾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⁶⁶⁾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_____ 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61) 특허법: 출원일 소급효 예외 확공조국 / +30日(외), +30日(임), +30日(심), +3月(조) vs 디자인보호법: 출원일 소급효 예외 조

62) 우선권주장 자동승계 규정 특허법과 같다.

63) 특허법 54

64) 특허법 1년 vs 상표법 6개월 vs 디자인보호법 6개월

65) 특허법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vs 상표법 출원일부터 3개월 vs 디자인보호법 출원일부터 3개월

66)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_____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주체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재내자 조약당사국 출원인 또는 우선권주장 승계인
기간	6개월+2개월 이내 출원
서면	출원서에 취지, 국가명, 연월일 기재, 증명서류 첨부(출원일부터 3개월+2개월)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 _____⁶⁷⁾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주체	조약우선권주장을 한 자
기간	출원일부터 3개월
서면	보정서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⁶⁸⁾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_____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_____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2조(출원공개)⁶⁹⁾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_____,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_____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_____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_____.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_____.

주체	출원인
기간	최초 등록여부결정 전
서면	출원공개신청서

제53조(출원공개 효과)⁷⁰⁾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 그 디자인등록출

67) 특허법 54⑦: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68)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69) 특허법 64

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_____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_____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_____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_____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간접침해), 제118조(서류제출명령)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⁷¹⁾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_____ 이전하여야 한다⁷²⁾.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정보 제공)⁷³⁾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_____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_____이나 _____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⁷⁴⁾.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공서양속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⁷⁵⁾.

70) 특허법 65

71) 특허법 37

72) 관련디자인 함께 쟁점: 디반권 이전(54①但), 존속기간(91①但), 디자인권 이전(96①但, ⑥), 전용실시권 설정(97①但, ⑥)

73) 특허법 63-2

74) 출원공개: 공개신청(52①) / 46②後 거결·기가심결 확정

75) 52②但 와 동일

-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⁷⁶⁾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협의요구서)을 준용한다.

Ch.2 거절이유	특허	디자인(심사등록 거절이유)
	재외자+외국인+비동맹(25)	27
출원인	특발권 0%(33①本)/특발권 10%(44)	디발권 0%(3①本), 디발권 10%(39)
	직원(33①但)	직원(3①但)
기재요건	발설(42③ i, ii)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청구범위(42④ i, ii, ⑧, 45)	
성립성(2 i → 29①本)		2 i, ii, ii-2 → 33①本
산업상 이용가능성(29①本)		공업상 이용가능성(33①本) - 도면 기재 불비
신규성(29①각호), 진보성(29②), 선원(36①-③), 확대된 선원(29③-⑦)		신규성(33①각호), 창작성(33② i, ii), 선원(46①, ②), 확대된 선원(33③)
불특허(32) - 공서양속反, 공중 위생 해칠 우려		부등록(34) - 국기·훈장 동일·유사, 공서양속反, 타인 업무 혼동 우려, 기능성
범위 - 명도보정(47②前), 분할(52①), 분리(52-2①前), 변경(53①)		
분리출원 추가범위 제한(52-2①각호)		X
오약(47②後)		
조약反		조약反
X		관련디자인(35), 일부심사대상(37④),

76) 특허법 38

심사등록	일부심사등록
27	27
디받권 0%(3①本), 디받권 10%(39)	디받권 0%(3①本), 디받권 10%(39)
직원(3①但)	직원(3①但)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2 i, ii, ii-2→33①本	2 i, ii, ii-2→33①本
공업상 이용가능성(33①本) - 도면 기재불비	공업상 이용가능성(33①本) - 도면 기재불비
신규성(33①각호), 창작성(33② i, ii), 선원(46①, ②), 확대된 선원(33③)	창작성(33② ii)
부등록(34) - 국가·훈장 동일·유사, 공서양속反, 타인 업무 혼동 우려, 기능성	부등록(34) - 국가·훈장 동일·유사, 공서양속反, 타인 업무 혼동 우려, 기능성
조약反	조약反
관련디자인(35), 일부심사대상(37④),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관련디자인(62③), 일부심사대상(37④),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search line 심사X - 정보제공, 이의신청에 의존

심사등록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55)	이의신청사유(68①)	무효사유
27		
디받권 0%(3①本), 디받권 10%(39)		
직원(3①但)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2 i, ii, ii-2→33①本	일부 심사대상(37④),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일부 심사대상(37④),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제외
공업상 이용가능성(33①本) - 도면 기재불비		
신규성(33①각호), 창작성(33② i, ii), 선원(46①, ②), 확대된 선원(33③)		
부등록(34) - 국가·훈장 동일·유사, 공서양속反, 타인 업무 혼동 우려, 기능성	제외	후발적 무효사유 추가
조약反		
관련디자인(35), 일부심사대상(37④),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직권재심사사유(66-2)

관련디자인 中 기본디자인과만 유사·3년·기본디

자inken 존속(35㉑), 일부심사대상(37㉔), 물품·
물품류 기재불비(40㉒), 단일성(40㉑), 복수디
자인(41), 한 벌 물품 디자인(42) 제외

제 3 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⁷⁷⁾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⁷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____ 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1조(우선심사)⁷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⁸⁰⁾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_____⁸¹⁾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77) 특허법 57

78) 특허법 58: 등록 vs 디자인보호법 59: 지정

79) 특허법 61

80) 특허법 시행령 9: 방록4~~반~~수국/벤중직지/국조~~국~~출/합 vs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6: 방록4수국/벤중직지~~우~~/국조출/합

81) 복수디자인 일부 쟁점: 보완명령(38④,⑤), 비밀디자인청구(40①後), 보정각하결정(49②,③), 출원공개신청(52①後), 우선심사(61②), 거절결정(62⑤), 거절이유통지(63②), 등록결정(65後), 이의신청(68①後), 등록료 납부시 디자인별 포기(80①), 디자인권 분리 이전(96⑤), 디자인권 포기(105後), 무효심판(121①後), 권리범 위확인심판(122後),

주체	누구든지
기간	-
서면	우선심사신청서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처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처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⁸²⁾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82) 특허법 62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_____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_____ 한 경우
 2. _____ 된 경우
 3. _____ 이 _____ 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 _____ 이 기본디자인의 _____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 _____ 경우
 5. 기본디자인과 _____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 _____ 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_____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_____ 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 _____.
-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_____ 에 해당하거나 _____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_____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⁸³⁾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 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_____,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_____ 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⁸⁴⁾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 _____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_____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_____ 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83) 특허법 63

84) 특허법 67-2

주체	출원인
기간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서면	보정서, 재심사청구취지 표시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⁸⁵⁾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_____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보정)⁸⁶⁾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요지변경 아닌 범위)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요지변경 아닌 범위)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⁸⁷⁾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관련디자인 중 기본디자인과만 유사·3년·기본디자인권 존속), 제37조제4항(일부심사대상), 제40조부터 제42조(물품·물품류 기재불비, 단일성, 복수디자인, 한 벌 물품 디자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⁸⁸⁾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85) 특허법 66

86) 특허법 66-2

87) 특허법 66-3

88) 특허법 67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⁸⁹⁾ ① _____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 _____ 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 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_____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_____ 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_____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_____ 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이의신청 취지를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_____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⁹⁰⁾.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_____ 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지정·제척·기피·회피 中 지정), 제132조제2항(심사장이 사무 총괄) 및 제133조제2항(합의는 과반수로 결정)·제3항(합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준용한다.

89)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90) 기간연장 可(17)

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⁹¹⁾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_____ .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_____ .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_____ .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_____ 하여 심사·결정_____ .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답변서 제출기간) 및 제69조(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_____ 에는 제68조제3항(답변서 제출기간 부여 must)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_____ 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_____”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_____ .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_____”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_____ 및 이의신청_____ 에 대하여는 _____ ⁹²⁾.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_____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직권심사에 따른 의견서제출기회)에 따른 _____ 또는 제74조제2항(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_____ 에는 _____ .

91) 이의신청 직권: 직권심사, 병합·분리, 증거조사·보전

92)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취불심 가능, 취불심 청구시 해당 사실 이의신청인에게 통지(127)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_____.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전심판여 이외 제척사유)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⁹³⁾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예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절차 중지), 제129조(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 제출기회 주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전심판여 이외 제척사유), 제142조제7항(민사소송법 준용), 제145조(신청 or 직권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이의신청비용 부담 등)까지 및 제154조(이의신청비용액에 대한 집행권원)를 준용한다.

Ch.3 출원	특허	디자인
출원	출원(42)	출원(37) - 심사/일부심사
	정당권리자 출원(34,35) / 특허권 이전 청구(99-2)	정당권리자 출원(44,45) - 심사/일부심사
	분할(52) / 분리(52-2) / 변경출원(53)	분할출원(50) - 심사/일부심사
	공지예외주장(30)	신규성 상실 예외(36)
	우선권주장 - 조약(54) / 국내(55)	우선권주장 - 조약(51)
	임시명세서(42-2), 외국어출원(42-3)	x
	기탁(령2,3), 핵산염기서열(시규21-4) 등	
	명도 보정(47)	출원서, 도면 보정(48)
	발명자 정정(시규 28)	창작자 정정(시규 50)
	조기공개신청(시규 44)	출원공개신청(52) / 비밀디자인청구(43)
	심사청구(59,60), 우선심사신청(61),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시규 40-2), 심사유예신청(시규 40-3)	우선심사신청(61)
	재심사청구(67-2)	재심사청구(64)

Ch.4 심사	특허	디자인
심사관 협력	전문기관 등록(58)	전문기관 지정(59)
	제3자 정보제공(63-2)	제3자 정보제공(55), 일부심사 이의신청

93) 특허법 78

		(68)
	출원인 배경기술 기재 의무(42③ ii)	x
	외국심사결과 제출명령(63-3)	x
심사	거절이유통지(63)	거절이유통지(63)
	특허여부결정(62,66)	등록여부결정(62,65)
	보정각하결정(51)	보정각하결정(49)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132-17)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119), 거절결정불복심판(120)
	재심사청구(67-2)	재심사청구(64)
	직권재심사(66-3)	직권재심사(66-2)
	명도 직권보정 취하간주 후 재심사(66-2)	직권보정 취하간주 후 재심사(66)
출원공개(64)		출원공개신청(52)
		협의제 反 거절결정·기각심결 확정(56)
등록공고(87)		등록공고(90③)
서류열람(216)		서류열람(206)
비공개제도 - 국방상 필요 발명(41)		비밀디자인청구(43)

제 4 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⁹⁴⁾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⁹⁵⁾으로 정한다.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⁹⁶⁾ ① _____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_____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⁹⁷⁾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⁹⁸⁾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⁹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94) 특허법 79; 등록료 ① 3개월, ② 추가납부기간 6개월, ④ 보전기간 1개월 / ③ 추후보완 2개월·1년; 유지료 ① 등록일 기준, ② 추가납부기간 6개월, ④ 보전기간 1개월 / ③ 추후보완 2개월·1년, 권리회복신청 3개월; 특허법과 동일

9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⑤

96) 특허법 215-2(특허료 낼 때 청구항별 포기)

97) 특허법 80

98) 특허법 81

99) 특허법 81-2

을 내야 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¹⁰⁰⁾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¹⁰¹⁾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¹⁰²⁾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100) 특허법 81-3

101) 특허법 82

102) 특허법 83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¹⁰³⁾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¹⁰⁴⁾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_____,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_____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_____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_____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_____,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¹⁰⁵⁾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

10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3-2 징수금액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104) 특허법 84

105) 특허법 85

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¹⁰⁶⁾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_____ 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6) 특허법 86

제 5 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¹⁰⁷⁾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¹⁰⁸⁾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07) 특허법 87

108) 시행령 1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¹⁰⁹⁾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_____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_____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¹¹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_____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¹¹¹⁾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_____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_____과 도면에 적힌 _____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¹¹²⁾.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¹¹³⁾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9) 특허법 88, 특허법 20년 vs 디자인보호법 20년

110) 특허법 94

111) 특허법 97

112) 창작내용의 요점은 보호범위 정하는데 고려 x

113) 특허법 96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_____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_____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_____인 경우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¹¹⁴⁾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_____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_____·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_____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촉관계	디자인, 상표 vs 특허	특허, 실용신안, 상표/저작권 vs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저작권 vs 유사디자인
이용관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vs 특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저작권 vs 디자인, 유사디자인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¹¹⁵⁾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_____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114) 특허법 98; 특허법 실시권 제한: 전용실시권 설정, 이용·저촉관계; 배타권 제한: 94②(약의의 청약), 95(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96(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 vs 디자인보호법 실시권 제한: 전용실시권 설정, 이용·저촉관계; 배타권 제한: 94(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

115) 특허법 99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_____.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_____ 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_____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_____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_____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97조(전용실시권)¹¹⁶⁾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_____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_____ 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¹¹⁷⁾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116) 특허법 100

117) 특허법 101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통상실시권)¹¹⁸⁾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¹¹⁹⁾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_____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_____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_____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_____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¹²⁰⁾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118) 특허법 102

119) 특허법 103

120)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다. 특허법: 법정실시권 2개 vs 7개 중 직선디후 무상 vs 디자인보호법: 법정실시권 2개 vs 7개 중 직선디후+선출원 무상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¹²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법정실시권)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¹²²⁾¹²³⁾ ① 등록디자인과 _____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_____(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_____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_____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¹²⁴⁾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1) 특허법 104

122) 특허법 105

123) 특허법 106-117: 특허권 수용, 강제실시권 2개: 디자인보호법에는 관련 규정 없다.

124) 특허법 118

- ② 제84조제5항(디자인료 미납),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선사용권, 선출원, 중용권, 후출원 아닌 저촉 디자인권 등), 제110조(경매), 제162조(후용권), 제163조(강제실시권에 대한 후용권)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직무발명)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_____ 할 수 있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¹²⁵⁾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¹²⁶⁾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08조(질권)¹²⁷⁾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¹²⁸⁾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¹²⁹⁾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공평	직무발명	직무발명
	후출원 아닌 저촉 디자인권(105)	후출원 아닌 저촉 디자인권 등(103)
선의 산업설비 보호	특허료 미납(81-3⑤)	디자인료 미납(84⑤)
	선사용권(103)	선사용권(100)
	특허권 이전등록에 따른 중용권(103-2)	선출원(101)
	중용권(104)	중용권(102)
	경매(122)	경매(122)
	후용권(182)	후용권(162)
	강제실시권에 대한 후용권(183)	강제실시권에 대한 후용권(163)

125) 특허법 119

126) 특허법 120

127) 특허법 121

128) 특허법 123

129) 특허법 122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¹³⁰⁾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¹³¹⁾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Ch.5 디자인권	특허	디자인
특허권/ 디자인권	특허료 납부(79-81-3), 면제/감면(83), 반환(84)	디자인료 납부(79-84), 면제/감면(86), 반환(87)
	존속기간연장	x
	특허원부 등록	등록원부 등록
	특: 설이()포처: 효력발생요건	특: 설이()포처: 효력발생요건
	전: 설이()변소()처: 효력발생요건	전: 설이()변소()처: 효력발생요건
	통: 설()이변소처: 대항요건	통: 설()이변소처: 대항요건
	동의	동의
	이전(), 실시권, 질권 - 옆으로	이전(), 실시권, 질권 - 옆으로
	포기, 정정 - 전질직허	포기 - 전질직허
	특허증(86), 수용(106), 소멸(124), 실시보고(125), 특허표시(223)	등록증(89), 소멸(111), 디자인표시(214)
실시권	전용(100)	전용(97)
	통상 - 허락(102), 법정 2개 vs 7개, 강제 3개(106-2, 107, 138)	통상 - 허락(99), 법정 2개 vs 7개, 강제 1개(123)
질권	실시권 x(121)	실시권 x(108)
	물상대위可(123)	물상대위可(109)

130) 특허법 124

131) 특허법 125-2

제 6 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¹³²⁾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_____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_____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건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¹³³⁾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____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¹³⁴⁾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132) 특허법 126

133) 특허법 127

134) 특허법 128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3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¹³⁶⁾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_____

② 디자인 _____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_____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¹³⁷⁾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5) 특허법 128⑧ 5배

136) 특허법 130

137) 특허법 131

제118조(서류의 제출)¹³⁸⁾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_____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_____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_____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h.6 침해	특허	디자인
특허권/ 디자인권	실시권 - 제한(전용, 이용·저촉)	실시권 - 제한(전용, 이용·저촉)
	배타권 - 제한(94②, 95, 96, 법정 2개 vs 7개, 강제 3개 등)	배타권 - 제한(94, 법정 2개 vs 7개, 강제 1개 등)
침해	직접침해 - 정유보업	직접침해 - 정유보업
	간접침해 - 정유전업	간접침해 - 정유전업
민사	침해금지(126), 손해배상(128), 신용회복(131)	침해금지(113), 손해배상(115), 신용회복(117)
	입증책임경감 - 손해액 추정(128), 과실 추정(130), 자료제출명령(132), 구체적인 행위태양 제시의무(126-2), 생산방법 추정(129), 감정사항 설명의무(128-2)	입증책임경감 - 손해액 추정(115), 과실 추정(116), 서류제출명령(118)
	비밀유지명령(224-3)	비밀유지명령(217)
형사	침해죄(225), 몰수(231)	침해죄(220), 몰수(228)
기타벌칙	침비위허거비, 양벌규정, 과태료	침비위허거비, 양벌규정, 과태료

138) 특허법 132

제 7 장 심 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¹³⁹⁾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_____¹⁴⁰⁾¹⁴¹⁾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¹⁴²⁾.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¹⁴³⁾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¹⁴⁴⁾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_____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¹⁴⁵⁾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후발적 무효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후발적 무효사유)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⁴⁶⁾.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¹⁴⁷⁾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_____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¹⁴⁸⁾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등록디자인 이용·저촉관계) 또는 제2항(유사디

139) 거불심 자판단계에서 심판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 받은 경우는 특허법원에 불복(166①)

140) 보불심, 거불심, 취불심: 법정기간연장(17①), 추후보완(19)

141) 보불심, 거불심, 취불심: 특별수권사항(7)

142) 보불심 확정될 때까지 심사 중지(49③)

143) 특허법 132-17

144) 특허법 133

145) 거절이유 중 일부심사대상(37④), 1디자인1출원 set(40①,41,42), 물품명 오기제 제외(40②)

146) 이의신청(68④), 디무(121④): 등록원부 등록된 자에게 통지

147) 특허법 135

148) 특허법 138

자인 이용·저촉관계)¹⁴⁹⁾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_____
 _____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_____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_____
 _____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¹⁵⁰⁾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거불심)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
 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_____”
 _____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
 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
 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
 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
 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149) 95③(저작권과 이용·저촉관계)은 통신헌 x

150) 특허법 170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¹⁵¹⁾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¹⁵²⁾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심판청구방식)¹⁵³⁾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151) 특허법 139

152) 특허법 139-2

153) 특허법 14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적극적 권확)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_____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¹⁵⁴⁾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_____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¹⁵⁵⁾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54) 특허법 140-2

155) 특허법 141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¹⁵⁶⁾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¹⁵⁷⁾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¹⁵⁸⁾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¹⁵⁹⁾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¹⁶⁰⁾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¹⁶¹⁾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56) 특허법 142

157) 특허법 143

158) 특허법 144

159) 특허법 145

160) 특허법 146

161) 특허법 147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¹⁶²⁾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_____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_____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_____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_____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_____,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_____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¹⁶³⁾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¹⁶⁴⁾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¹⁶⁵⁾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¹⁶⁶⁾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¹⁶⁷⁾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¹⁶⁸⁾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

162) 특허법 148

163) 특허법 149

164) 특허법 150

165) 특허법 151

166) 특허법 152

167) 특허법 153

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¹⁶⁹⁾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중복심판금지)·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¹⁷⁰⁾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참가)¹⁷¹⁾ ① 제125조제2항(디무, 소극적 권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¹⁷²⁾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168) 특허법 153-2

169) 특허법 154

170) 특허법 154-3

171) 특허법 155

172) 특허법 156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¹⁷³⁾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¹⁷⁴⁾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¹⁷⁵⁾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7조(직권심리)¹⁷⁶⁾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¹⁷⁷⁾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¹⁷⁸⁾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¹⁷⁹⁾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73) 특허법 157

174) 특허법 158

175) 특허법 158-2

176) 특허법 159

177) 특허법 160

178) 특허법 161

179) 특허법 162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1조(일사부재리)¹⁸⁰⁾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¹⁸¹⁾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 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¹⁸²⁾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180) 특허법 163

181) 특허법 164

182) 특허법 164-2

제153조(심판비용)¹⁸³⁾ ① 제121조제1항(디무) 및 제122조(권확)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보불심)·제120조(거불심, 취불심) 또는 제123조(통실허)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¹⁸⁴⁾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¹⁸⁵⁾ 제134조제1항·제2항(답변서 제출 등), 제143조 및 제144조(참가)는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¹⁸⁶⁾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에서 밝힌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¹⁸⁷⁾ ① 심판관은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Ch.7 심판 특허

디자인

절차 **심판원:** 특허심판원(132-16), 심판관(143), 심판관(130), 심판장(132), 심판의

183) 특허법 165

184) 특허법 166

185) 특허법 171

186) 특허법 172

187) 특허법 176

	심판장(145), 심판의 합의체(146)	합의체(133)
	당사자, 대리인: 공동심판(139), 국선대리인(139-2)	공동심판(125), 국선대리인(125-2)
	방식: 심판청구방식(140, 140-2),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141),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142)	심판청구방식(126, 127),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128),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129)
	심리: 답변서 제출 등(147), 심리(154), 적시 제출주의(158-2), 심결(162)	답변서 제출 등(134), 심리(142), 적시제출주의(146-2), 심결(150)
	직권: 직권 진행(158), 직권심리(159), 직권 증거조사·보전(157⑤), 직권 병합·분리(160), _____(154-2), 참고인 의견서 제출(154-3), 조정위원회 회부(164-2)	직권 진행(146), 직권심리(147), 직권 증거조사·보전(145⑤), 직권 병합·분리(148), 참고인 의견서 제출(142-2), 조정위원회 회부(152-2)
	기타: 절차 중지(164), 심판청구 취하(161), 심판비용(165, 166), 일사부재리(163)	절차 중지(152), 심판청구 취하(149), 심판비용(153, 154), 일사부재리(151)
	side 절차: 지정(144)·제척·기피(148-153)·회피(153-2), 참가(155, 156), 증거조사·보전(157), 심판청구서 보정(140②, 140-2②)	지정(131)·제척·기피(135-140)·회피(141), 참가(143, 144), 증거조사·보전(145), 심판청구서 보정(126②, 127②)
심판종류	출원/____ 거불심(132-17, 170-172, 176)	출원 거불심(120, 124, 155-157), 취불심(120, 156, 157), 보불심(119, 157)
	____(136, 133-2)	-
	특무(133), ____ (134), ____ (137)	더무(121)
	적극적 권확(135①), 소극적 권확(135②)	적극적 권확(122), 소극적 권확(122)
	통실희(138)	통실희(123)
재심	178-185	158-165
특허법원	186-188, 189-191-2	166-172
	188(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x
기타	____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190, 191), 불복 제한(224-2)	대가에 관한 불복(170, 171), 불복 제한(216)

제 8 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¹⁸⁸⁾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¹⁸⁹⁾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¹⁹⁰⁾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¹⁹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____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____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_____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____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¹⁹²⁾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

188) 특허법 178

189) 특허법 179

190) 특허법 180

191) 특허법 181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¹⁹³⁾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¹⁹⁴⁾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¹⁹⁵⁾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¹⁹⁶⁾ ① 심결에 대한 소와 _____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통신허 대가)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심판비용 부담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적격)¹⁹⁷⁾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디무), 제122조(권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통신허)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¹⁹⁸⁾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_____ (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___ 또는 제166

192) 특허법 182

193) 특허법 183

194) 특허법 184

195) 특허법 185

196) 특허법 186

197) 특허법 187

198) 특허법 188

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¹⁹⁹⁾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²⁰⁰⁾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통신허대가)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²⁰¹⁾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²⁰²⁾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199) 특허법 189

200) 특허법 190

201) 특허법 191

202) 특허법 191-2

제 9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²⁰³⁾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_____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_____ (이를 간접출원이라 함).

국제출원방법	
국제사무국에 직접(직접출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국제출원의 일반적인 방법.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eHague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 가능.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경유(간접출원) only 영어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간접 제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서 정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첫째 지식재산처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국제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지식재산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송달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송달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국제출원(직접출원 or 간접출원) →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 국제등록 → 국제등록 공개 → 지정 계약당사자 관청 실체심사 → 5년 단위로 국제등록 갱신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_____
2. 대한민국에 _____(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_____가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03) 디자인보호법 173-178 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통한 간접출원시 적용되는 규정.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대한민국 국민 or 재내자)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_____)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_____에는 국제출원서에 _____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_____.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_____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_____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_____
3. _____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대체서류)는 _____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_____
_____ 204).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_____
_____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_____(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_____(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_____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_____ 205).

1.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_____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_____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_____(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_____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_____이 없는 경우
6. _____표시가 없는 경우

204) 특허법 28②단

205) 특허법 194 적언발청표지인 vs 디자인보호법 177② 언도표지인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_____.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_____”라 한다)을 _____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_____.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_____.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_____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 _____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²⁰⁶⁾ 제33조제3항(확선 지위)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_____,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_____,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²⁰⁷⁾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²⁰⁸⁾.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06) 출원공개신청 → 국제등록공개 : 확선 지위, 보상금청구권, 제3자 실시 우선심사사유, 서류열람 가능시기

207) 출원 후 → 국제등록공개 후 : 심사개시 시점, 보정기간, 조약우주 증명서류 제출기간

208) 출원서 제출 → 심사개시 vs 국제등록공개 → 심사개시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만으로 출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취성도한 보완명령)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iv)에 따른 ____ 및 같은 협정 제16조(1)(v)에 따른 ____ 등 _____에 따라 _____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_____,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_____.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 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_____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_____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_____²⁰⁹⁾.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209) 위반시 비밀누설죄 적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_____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계약에 따른 일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_____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국제등록공개 이후 보정 미)”으로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3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_____”로 한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출원일에 있는 _____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신청)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_____”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_____된”으로 한다.

제53조(출원공개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_____가 있는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

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_____”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자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61조(우선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일부심사 대상)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_____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직권보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직권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_____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등록료, 등록료 감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시 수수료 반환)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등록료 납부시 등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_____을 하여야 한다.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_____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_____,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_____은 _____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은 함께 이전 must) 또는 같은 조 제2항(공유자 동의 받지 아니하면 지분 이전 不可)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_____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_____.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²¹⁰⁾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_____.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비밀디자인 침해금지청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210) 시규 9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 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 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어 정의	
국제등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 다만 국제등록이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함.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은 국제사무국(직접출원)에 국제출원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 관청을 통해 국제출원(간접출원)한 경우는 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후 이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달하는데, 1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관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고, 1개월 이후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됨. 다만 국제출원에 방식상 하자가 있어 보완명령 받고 대체서류 제출한 경우는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아니라 대체서류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됨.
국제출원	국제등록을 위해서 디자인의 도면 등을 포함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절차.
국제등록부	국제출원이 방식요건에 부합하면 국제사무국이 생성하는 등록부.
계약당사자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계약당사자 영역	계약당사자의 영역이란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영역, 계약당사자가 정부간 기구인 경우 그 정부간 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국제출원의 지정 지정 계약당사자	지정이란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그 국제등록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것.
국제등록공개	국제사무국이 국제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 국제등록된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
국제등록공개 연기	최장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연기 신청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를 연기하는 것.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국제출원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을 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공개료는 연기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개료나 도면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됨.
보호거절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이유통지하는 것.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통지.
보호부여기술서 등록결정서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심사결과 국제등록의 보호를 승인할 때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서류. 단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보호거절통지도 안하고 보호부여기술서도 발송하지 않으면 보호거절통지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의 경과만으로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이 보호를 받음.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총 15년).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총 20년까지 보호 가능.
국제등록 변경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국제등록 권리자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 포기(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일부 디자인으로 감축(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하는 것 등.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²¹¹⁾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_____ 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_____ 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_____ 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²¹²⁾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08조 삭제

제209조(서류의 송달)²¹³⁾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²¹⁴⁾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²¹⁵⁾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11) 특허법 216

212) 특허법 217

213) 특허법 218

214) 특허법 219

215) 특허법 220

제212조(디자인공보)²¹⁶⁾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²¹⁷⁾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²¹⁸⁾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_____ 또는 그 _____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²¹⁹⁾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16조(불복의 제한)²²⁰⁾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²²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216) 특허법 221

217) 특허법 222

218) 특허법 223

219) 특허법 224

220) 특허법 224-2

221) 특허법 224-3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²²²⁾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²²³⁾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22) 특허법 224-4

223) 특허법 224-5

제 11 장 벌칙

제220조(침해죄)²²⁴⁾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1조(위증죄)²²⁵⁾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²²⁶⁾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거짓행위의 죄)²²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²²⁸⁾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²²⁹⁾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_____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_____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²³⁰⁾ 제43조제4항에 따라 _____ (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_____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²³¹⁾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

224) 특허법 225

225) 특허법 227

226) 특허법 228

227) 특허법 229

228) 특허법 229-2

229) 특허법 226

230) 특허법 226② 전문심리위원 비밀누설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vs 디자인보호법 225

③④ 비밀디자인 열람한 자 또는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 열람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31) 특허법 226-2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제227조(양벌규정)²³²⁾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8조(몰수 등)²³³⁾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과태료)²³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232) 특허법 230

233) 특허법 231

234) 특허법 232



품격있는 강의,
믿을수있는 강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리사스쿨